

I.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 1

1.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요	3
2. 주민참여예산제도 법적 근거	5
3.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유형	7

II.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11

1.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	13
가. 주민의 기준	13
2. 주민참여예산기구	14
가.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14
1)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체계	14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방식	17
3)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현황	20
3. 주민참여 방법 및 범위	24
가. 주민참여 방법	24
나. 주민참여 범위	27
4. 주민참여예산 사업 구분	31
가. 주민참여예산 사업 유형	31
나. 공모 및 제안사업(주민주도형 사업)	34
다. 일반참여예산 사업	39
라.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	40
5. 주민참여 활동 지원	45
가. 주민참여예산 교육	45
나. 숙의 활동 지원 및 정보제공	48
다. 주민참여예산 홍보	51
라. 주민참여예산제도 온라인 운영	52

III. 주민참여예산의 적정 규모 / 55

1. 자치단체 유형(안)	57
2. 주민참여예산 사업 유형별 예산실적	58
3.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한도액 규모	61
4. 공모사업비 규모	63
5. 공모 외 주민제안사업 규모	68
6. 일반참여예산 규모	75
7. 자치계획형 참여예산 규모	80
8. 주민참여예산 총사업비 규모	84
9. 단체유형별 주민참여예산의 적정 규모	86
가. 유형 구분	86
나. 주민참여 범주별 예산 규모	87
다. 협의의 주민참여예산 규모	88

IV. 자치단체 운영 사례 / 91

1. 도시형 광역자치단체	93
가. 대구광역시	93
2. 도시형 기초자치단체	105
가. 경기도 시흥시	105
나. 충청남도 당진시	116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126
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138
3. 도농형 광역자치단체	149
가. 경기도	149
4. 도농형 기초자치단체	159
가. 강원도 홍천군	159
나. 경상남도 거창군	173

I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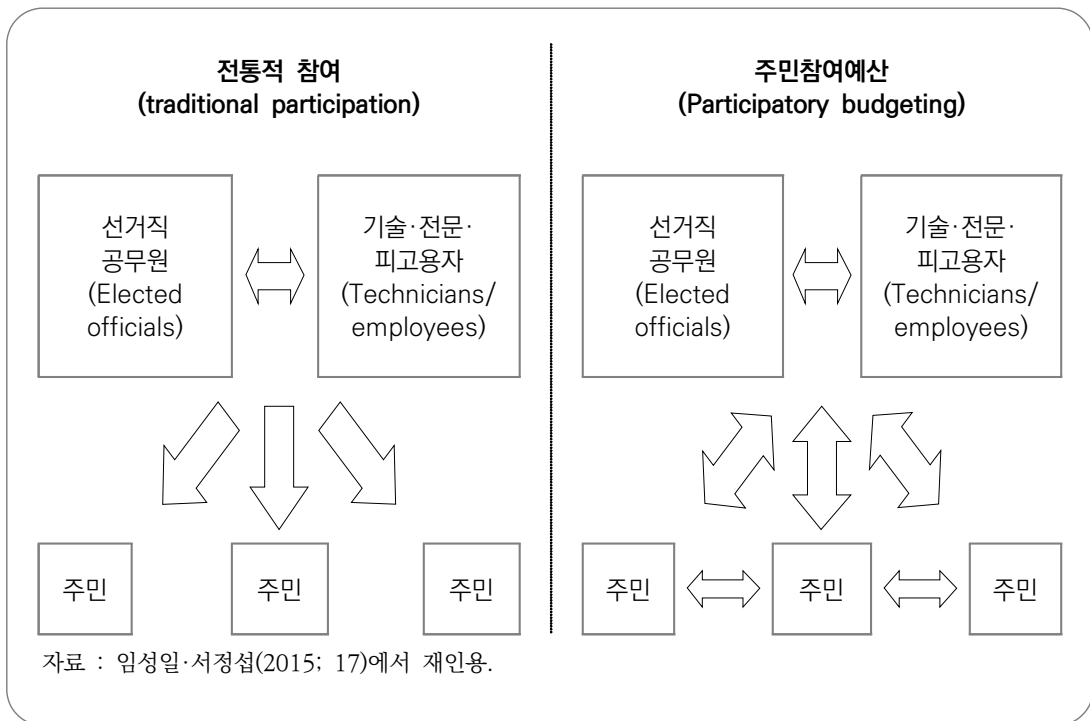
I.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1.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요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임.
- 1989년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Rio Grande do Sul)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Porto Alegre)에서 최초로 실시됨.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예산편성 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으며, 1996년 국제연합에서 ‘세계 40대 훌륭한 시민 제도’로 선정될 만큼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음. 이후 이 제도는 브라질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감.
-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민참여 예산 조례 제정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곳은 광주광역시 북구임. 이후 울산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으로 확대되었고, 2011년 3월에는 지방재정법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함. 2018년 3월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개편함. 이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을 중심으로 예산 집행과 결산 및 성과 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과정을 제외한 예산 과정 전체로 확대됨. 또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확대되어 기존의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짐.
-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과 운영, 주민참여 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주민참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과정에서 필요함.
 - 첫째,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선호와 실제 선호와의 괴리에서 오는 대의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주민참여가 필요함.

- 둘째, 위법 행정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복지 증대로 주민의 행정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급부행정의 단순한 수령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 참여의 일환으로 주민참여가 필요함.
- 넷째, 주민참여는 자치행정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함.
- 핵심은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점해 왔던 예산편성 활동에 주민이 직접 관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음.
- 예산과정은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만 영향을 받다가 주민이라는 새로운 참가자의 등장으로 다자간 의사결정과정으로 변모함.

전통적 주민참여형태와 주민참여예산



-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역할을 담당함.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여러 나라들을 비교해보면 부패한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기능(브라질, 남미) 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극복(서유럽), 민주주의 경험 향상(동유럽, 중앙 유럽)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안성민·최윤주, 2009).
-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부패축소, 공공서비스 공급개선, 예산우선순위의 전환, 자원배분과정에서의 사회정의와 재분배 강화, 그리고 효율성 증진과 합리적 행정도모 등의 순기능을 가져옴.

2. 주민참여예산제도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8. 3. 27.]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3.>
- [제목개정 2020. 3. 3.]

-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사회의 영향에 의해 2003년을 기점으로 면모를 보였으며, 그 후 몇 가지 과정을 거쳐 현재 법적 의무제도로 변화됨.

- 2003년 7월 행정안전부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변화를 보임.

- 2003. 5월 광주광역시 북구청 주민참여예산제 최초 도입(조례 '14. 3 제정)
- 2003. 7월 「2004년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권고
 - 광주 북구, 울산 동구 주민참여예산조례 도입
- 2005. 9월 지방재정법 개정(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조항 신설)

제39조(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2006. 8월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 통보(행정안전부 → 지자체)
- 2010. 10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 시달(행정안전부 → 지자체)
- 2011. 3월 지방재정법 개정 【제39조 의무사항으로 규정('11.9.9 시행)】

제39조(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015. 5월 지방재정법 개정【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 조항 신설('15.11.13시행)】
제39조(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2017. 7월 국정과제(75번)의 실천과제로 선정(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목표)
국정과제(75번)-실천과제(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지자체 핵심정책·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율 통제

3.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유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로서 2022년 현재 우리나라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본 제도의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용조례는 대개 조례 제정의 목적, 주민의 범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의견 수렴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

-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모델은 세 가지 유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닌 특성과 여건에 따라 모델 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제1유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강제 규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구성됨.
 - 제2유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라는 강제규정은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제3유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라는 강제규정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과 분과위원회의 인적 구성 및 재정지원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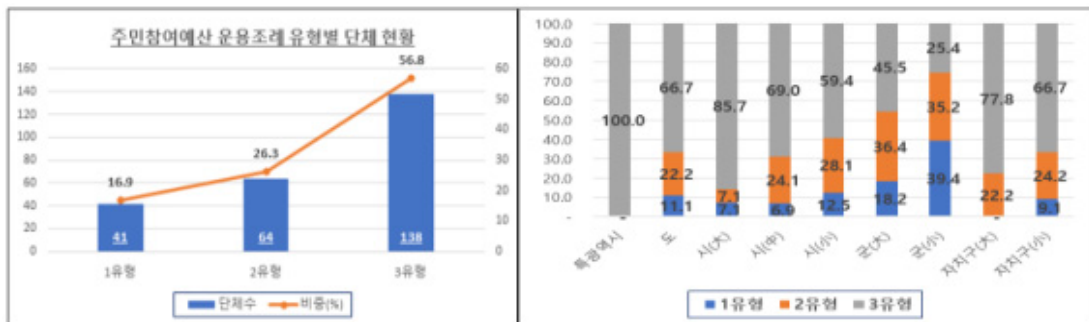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조례 모델

구분	모델 비교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유형과 1~9조 동일	제2유형과 1~13조 동일
운영 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광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강제조항)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협의회 운영 임의조항)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공개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회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위원회 지원	제10조(위원회, 연구회, 협의회 운영 임의조항)		제24조(시행규칙) / 부칙
기타	제11조(시행규칙) / 부칙	제15조(시행규칙) / 부칙	제24조(시행규칙) / 부칙

- 2022년 현재 1유형을 채택한 지방자치단체는 41개, 2유형을 채택한 지방자치단체는 64개인 반면, 3유형을 채택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자치단체의 56.8%인 138개로 나타나고 있음.
- 자치단체 유형별로 주민참여예산 운용조례를 살펴보면, 특별·광역시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및 자치구에서는 3유형을 채택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데 반해, 1유형, 2유형을 채택한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시와 군 단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용조례 유형별 현황

(단위 : 개, %)



>>> 자치단체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용조례 현황(2022년)

구분		단체수				비중(%)		
		계	1유형	2유형	3유형	1유형	2유형	3유형
광역	특·광역시	8	0	0	8	-	-	100.0
	도	9	1	2	6	11.1	22.2	66.7
기초	시(大)	14	1	1	12	7.1	7.1	85.7
	시(中)	29	2	7	20	6.9	24.1	69.0
	시(小)	32	4	9	19	12.5	28.1	59.4
	군(大)	11	2	4	5	18.2	36.4	45.5
	군(小)	71	28	25	18	39.4	35.2	25.4
	자치구(大)	36	0	8	28	-	22.2	77.8
	자치구(小)	33	3	8	22	9.1	24.2	66.7
합계		243	41	64	138	16.9	26.3	56.8

II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II.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1.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

가. 주민의 기준

-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주민은 누구나 각 자치단체가 제정·운영하는 조례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각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에 의하면, 주민이란 당해 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지자체 예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하고 있음.

- 당해 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당해 자치단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 및 생산시설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경기도 등)
-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단체,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 당해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과 회원(대전광역시 등)
 - 당해 자치단체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대구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 그 밖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경상남도, 광주 북구)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인천 부평구)

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출자기관이나 투자기관(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대구광역시, 경기도 등)

- ○○시설공단은 2018년 2억 5천만원을 들여 관내 △△위터파크 주변 화단 데크를 설치하고 2019년 2억 7천 2백만원을 들여 ○○실내빙상장 관중석 구조를 개조함. 2020년에는 2억원을 들여 빙상장 건물 입구의 철골 구조물을 교체함. ○○시설공단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했지만, 이 예산은 엉뚱하게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됨. ○○시설공단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인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부당개입해 예산을 사용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당한 사례로 ○○시설공단 전 이사장 김모씨는 주민참여예산을 획득하기 위해 직원과 직원가족, 직원지인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따옴(○○ MBC 2022년 6월 23일 방송).

2. 주민참여예산기구

가.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1)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체계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주민참여예산 기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하위 읍·면·동 단위의 지역회의로 구성되는데, 이밖에 자치단체별로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청년 등), 운영위원회, 민관협의회, 연구회 등 다양한 참여, 지원조직으로 구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공모사업 또는 주민제안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일반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서 확정, 해당 지자체의 예산안 전체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 등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

- 지역회의는 주민제안사업 중 읍·면·동 단위 지역사업의 제안 및 우선순위 1차 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써 비상설로 운영하기도 함. 그리고 기 설치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또는 읍·면·동 자문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조례에 근거하여 읍·면·동장이 위원위촉)나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위촉)가 그 역할을 대행하기도 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는 소규모 시·군을 제외할 경우 대체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 수와 분과위 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특별광역시 : 위원 115명, 9개 분과위
 - 도, 큰 시(大), 큰 자치구(大) : 위원 70명, 분과위 4~5개
 - 중규모 시(中), 큰 군(大), 작은 자치구(小) : 위원 30~40명, 분과위 4개
 - 작은 시(小), 작은 군(小) : 위원 20~30명, 분과위 3개

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으로는 참여수준의 적정화를 기하기 곤란할 수 있어 최소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규모와 분과위원회 비교(2022년)

(단위 : 명,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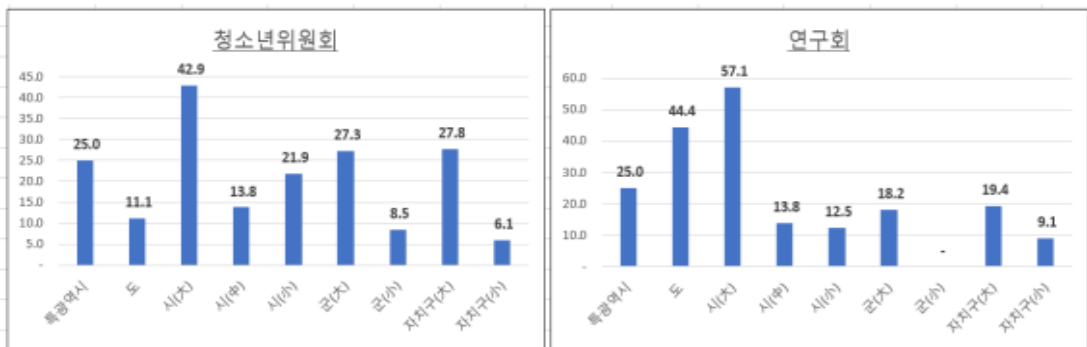
구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명)					분과위원회	
		평균	최고	최소	최빈값	표준오차	설치단체	분과위수
광역	특광역시	115	200	30	100	19.5	8(100)	8.8
	도	69	150	30	60	14.6	8(88.9)	5.0
기초	시(大)	73	100	48	80	5.1	14(100)	4.6
	시(中)	52	90	26	60	3.2	28(96.6)	3.8
	시(小)	35	80	15	40	3.7	20(62.5)	3.1
	군(大)	28	50	10	30	4.7	8(72.8)	3.8
	군(小)	20	60	0	-	1.5	16(22.5)	3.2
	자치구(大)	72	465	20	50	12.2	31(86.1)	4.3
	자치구(小)	38	84	0	50	3.3	25(75.8)	3.6

※ 주 : ()내의 수는 분과위 설치단체 비중이며, 분과위원회 수는 설치단체를 기준으로 산정.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주도하거나 촉진하는 주민참여예산기구는 점진적으로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2022년 2월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230개, 분권위원회, 지역회의는 각각 164, 156곳의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음.
- 이러한 핵심적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설치가 미흡한 지역은 대체로 광역자치단체나 대도시 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음.
- 지역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연구회, 청소년위원회 등의 설치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있음.

▶▶▶ 단체유형별 청소년위원회와 연구회 설치 비율

(단위 : %)



▶▶▶ 단체유형별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비율(2022년)

(단위 : %)

구분		운영 위원회	청소년 위원회	지역회의	민관 협의회	연구회	기타기구
광역 단체	특광역시	75.0	25.0	62.5	12.5	25.0	62.5
	도	66.7	11.1	22.2	22.2	44.4	33.3
기초 단체	시(大)	50.0	42.9	92.9	35.7	57.1	14.3
	시(中)	34.5	13.8	75.9	20.7	13.8	10.3
	시(小)	25.0	21.9	71.9	15.6	12.5	12.5
	군(大)	9.1	27.3	72.7	9.1	18.2	9.1
	군(小)	4.2	8.5	38.0	-	-	9.9
	자치구(大)	30.6	27.8	83.3	30.6	19.4	25.0
	자치구(小)	18.2	6.1	78.8	24.2	9.1	6.1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방식

주민참여예산기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예산위원의 위촉 방식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자치단체는 공모·추첨 방식, 공모·선정방식, 추천방식, 당연직 등을 활용

- (공모·추첨)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 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
 - 예산학교 사전수료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나 성별·연령별·지역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쿼터제 등의 장치를 두는 경우도 공모·추첨에 해당
- (공모·심사) 공모 후 자치단체가 일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
- (추천) 단체장, 의회, 시민단체, 지역회의 등의 추천에 의해 선정
- (당연직) 공무원 등 일정 직위에 있는 자가 자동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되는 경우
-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위촉은 공모(추첨, 선정), 추천(단체장,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 당연직(공무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2021년 2월 기준으로 주민참여예산기구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공모를 통한 방법이 61.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단체장·지방의원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이 30.2%로 나타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구성 비교(2021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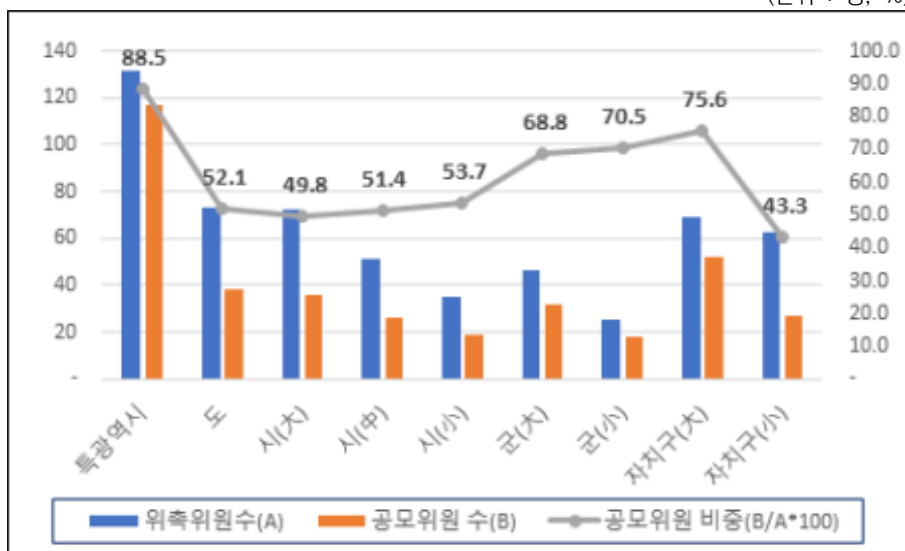
구분	합계 (위원수)	공모 위원	추천위원				당연직 공무원	기타
			단체장	지방 의회	시·군·구, 읍·면·동	시민 단체		
특·광역시	132	117	6	1	4	-	2	2
도	73	38	1	1	16	0	7	14
시(大)	72	36	2	1	27	4	2	1
시(中)	51	26	1	1	17	2	1	2

구분	합계 (위원수)	공모 위원	추천위원				당연직 공무원	기타
			단체장	지방 의회	시·군·구, 읍·면·동	시민 단체		
시(小)	35	19	2	0	12	2	2	1
군(大)	47	32	7	0	6	1	2	8
군(小)	26	18	2	0	9	1	3	1
자치구(大)	69	52	2	0	13	1	1	2
자치구(小)	62	27	-	0	7	1	1	2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위촉 방법을 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별광역시와 자치구의 경우는 공모위원이 80% 내외의 비중을 나타내는 반면에 도와 시·군은 40~50%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특히, 공모방식으로 위촉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전체 위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체유형별로 차이가 있는데, 특별·광역시와 큰 규모의 자치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모위원 수 및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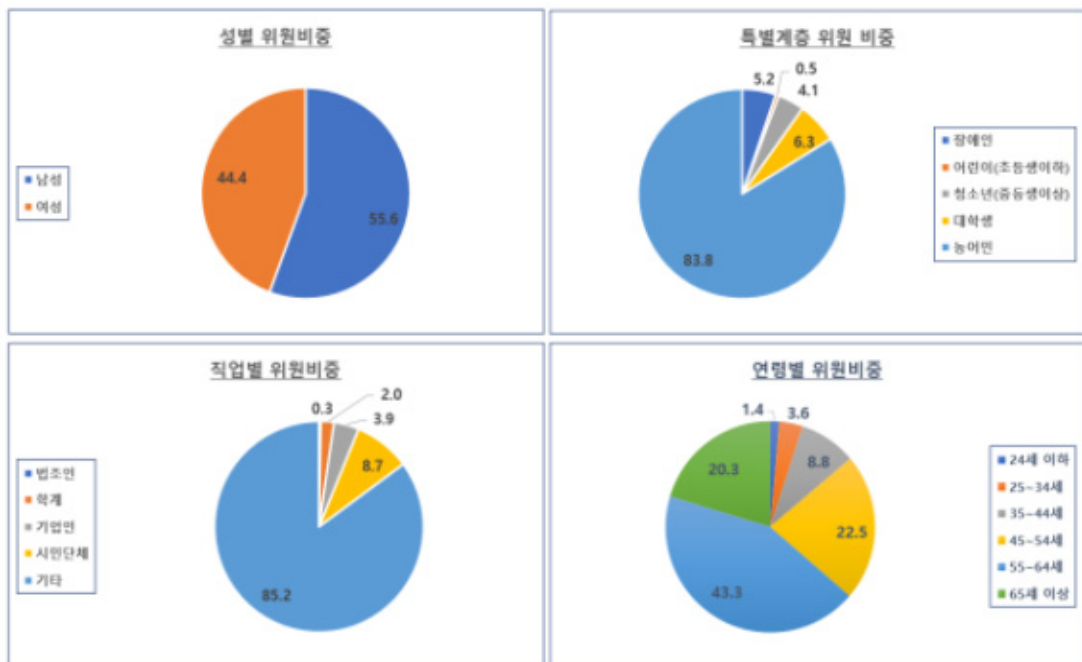
(단위 : 명, %)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위원구성의 실태를 살펴보면 2021년 2월 기준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성별 구성 비율은 남성이 55.6%로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직종별 구성 비율은 기타가 8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시민단체 관계자 8.7%, 기업인 3.9%, 교수 등 학계관계자 2% 순으로 나타남.
- 특별계층 위원 비중은 살펴보면 농어민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학생, 장애인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령대별 위원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55~64세의 연령대가 43.3%로 가장 높고, 45~54세 연령대는 22.5%, 65세 이상은 20.3%이지만, 34세 미만은 5%에 지나지 않음.
- ○○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농업인 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민·관이 협업을 통해 농업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직능단체별 위원구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구성 현황(2021년)

(단위 : %)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위원구성은 원칙적으로는 공모 및 추천 방식을 활용하되, 주민 참여예산제도의 기본가치 구현을 위하여 성별·인구별 비례 선발, 사회적 약자 우선 선발 등의 보완 장치를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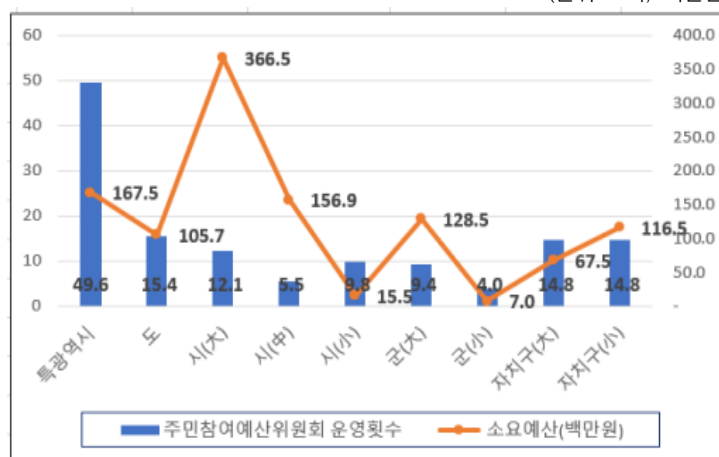
- 참여예산위원에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필요는 없으나 위원위촉 전후에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예산학교 수료 등 일반 주민이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3)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현황

-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핵심기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그 하부기구로 구분하여 2021년도 운영개최 횟수를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 대다수 자치단체는 연간 10회 이상 실적을 보이는데 반면 후자인 하부기구는 연간 2~3회 수준으로 개최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이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운영에 지출된 단체당 평균예산액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367백만원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소규모 시와 군은 15.5백만원 이하를 보이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운영횟수와 소요예산

(단위 : 회, 백만원)



▶▶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실적(2021년)

(단위 : 회, 백만원)

구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횟수				하부기구 운영횟수	소요예산 (백만원)
		평균	최고	최소	표준오차		
광역 단체	특광역시	49.6	172	5	18.3	4.5	167.5
	도	15.4	90	1	9.8	10.6	105.7
기초 단체	시(大)	12.1	84	1	6.4	48.3	366.5
	시(中)	5.5	39	1	1.6	16.8	156.9
	시(小)	9.8	73	1	2.8	6.2	15.5
	군(大)	9.4	43	1	4.5	11.5	128.5
	군(小)	4.0	31	1	0.9	2.9	7.0
	자치구(大)	14.8	123	1	4.2	13.9	67.5
	자치구(小)	14.8	232	1	7.2	9.3	116.5

※ 주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횟수에는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등이 포함된 것이며, 하부기구 운영 횟수에는 분과위, 지역회의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제외한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운영실적을 의미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현황(2022년)



- 한편, 13개 자치단체(군 12, 자치구 1)를 제외한 230개 자치단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021년 활동실적을 살펴보면, 단체당 평균 개최회수를 기준으로 특별·광역시는 49.6회로 가장 많고, 도 15.4회, 자치구 15회인 반면에 시와 군은 각각 7.5회, 4.8회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2021년도 주민참여기구의 운영실적을 다음과 같이 각종 행사를 기준으로 자치단체 유형별로 정리하면 표와 같음.

이러한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주요행사 외에도 엠보팅, 찾아가는 제안마당,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 성과보고회, 청소년활동단 발대식, 마을의제 발굴, 우선순위 심사를 위한 현장확인, 시민발표대회, 주민설명회, 온라인공론장(주민, 청소년) 등이 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행사가 주민참여예산 활동의 내실화로 나타나는 정도는 자치단체 유형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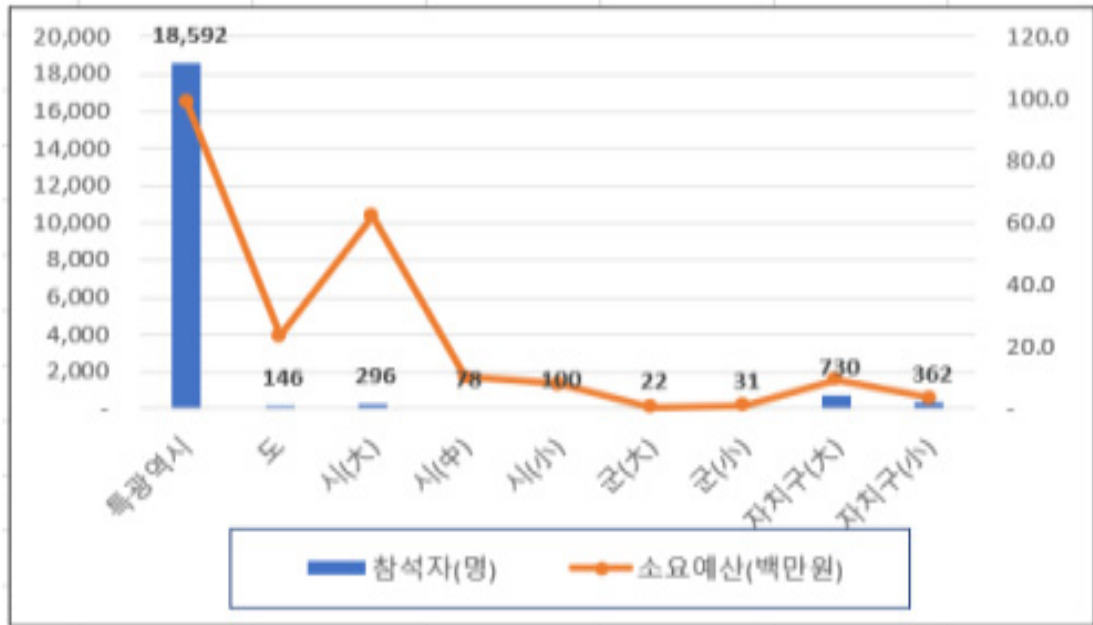
>>> 주민참여 행사 종류별 운영실적 비교(2022년)

(단위 : %)

구분	워크숍	토론회	원탁회의	퍼실리테이터 지원	총회	컨설팅	기타
특광역시	62.5	50.0	12.5	62.5	87.5	62.5	50.0
도	11.1	-	11.1	11.1	77.8	33.3	33.3
시(大)	21.4	-	-	14.3	85.7	21.4	42.9
시(中)	20.7	17.2	6.9	24.1	65.5	13.8	24.1
시(小)	25.0	6.3	6.3	21.9	43.8	15.6	31.3
군(大)	9.1	9.1	-	27.3	54.5	36.4	18.2
군(小)	7.0	1.4	2.8	7.0	22.5	7.0	5.6
자치구(大)	25.0	19.4	2.8	33.3	83.3	38.9	18.3
자치구(小)	3.0	6.1	-	6.1	42.4	12.1	48.5

- 이러한 행사의 참석자 및 소요예산을 자치단체 유형별로 비교하면,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주민참여 행사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농어촌 지역은 대체로 행사실적이 저조함을 알 수 있음.

>>> 주민참여 행사 참석자 규모와 소요예산 비교



>>> 주민참여 행사 참석자와 소요예산 비교(2022년)

단체유형	행사 참석자수(명)				행사 소요예산(백만원)			
	평균	최고	최소	표준 오차	평균	최고	최소	표준 오차
특광역시	18,592	63,631	52	9,254	99.2	387.4	3.0	45.5
도	220	468	48	76	30.4	110.0	5.0	14.4
시(大)	377	2,921	55	255	79.2	725.0	1.1	64.8
시(中)	113	521	20	28	14.3	50.0	1.0	3.0
시(小)	152	662	9	42	13.6	50.0	1.0	3.2
군(大)	22	100	-	9	0.5	2.5	-	0.3
군(小)	107	107	8	32	4.0	20.0	-	1.3
자치구(大)	974	10,465	30	403	12.1	98.0	0.9	3.7
자치구(小)	498	3,614	14	174	6.5	20.0	-	1.5

3. 주민참여 방법 및 범위

가. 주민참여 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방법을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예산안 제출 시 주민의견서 첨부과 사업공모 방식에서 주민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위원회 활동결과 홈페이지 공개, 온라인 설문조사, 서면 설문조사, 참여 예산 투표 및 전자투표, 사업간담회, 사업공청회, 모바일 설문조사 순의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체유형별 주민참여예산의 참여방법별 단체비중(2022년)

(단위 : %)

단체유형	광역단체		기초단체						
	특·광역시	도	시(大)	시(中)	시(小)	군(大)	군(小)	자치구(大)	자치구(小)
사업공청회	62.5	11.1	7.1	17.2	9.1	9.1	7.0	19.4	39.4
사업간담회	62.5	11.1	35.7	17.2	12.1	18.2	22.5	38.9	48.5
서면설문조사	50.0	33.3	42.9	65.5	69.7	72.7	59.2	44.4	63.6
온라인(인터넷) 설문조사	75.0	77.8	57.1	69.0	69.7	63.6	69.0	52.8	57.6
모바일(앱등) 설문조사	62.5	44.4	28.6	13.8	18.2	18.2	5.6	19.4	24.2
사업공모 (참여예산사업)	87.5	88.9	92.9	93.1	90.9	81.8	70.4	91.7	69.7
참여예산 투표 및 전자투표	87.5	44.4	57.1	27.6	36.4	45.5	15.5	80.6	57.6
예산안 제출시 주민의견서첨부	100	88.9	100	89.7	81.8	81.8	85.9	83.3	66.7
위원회활동결과 홈페이지공개	87.5	88.9	85.7	75.9	78.8	54.5	39.4	86.1	60.6

※ 주 : 각 지자체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행정안전부 주민참여 방법조사

- 주민공모사업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단체유형별로 주민참여의 방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주민(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이 주도하는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공모제안 활동은 대다수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대한 주민투표로 이어지는 자치단체는 특별광역시, 자치구, 인구 50만 이상 시이지만, 나머지 자치단체 유형에서 주민투표는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자치단체 사업부서가 주도하고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일반참여예산사업의 경우, 공청회, 간담회 보다 주로 설문조사를 통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특별·광역시와 일부 자치구를 제외한 대다수 자치단체에서는 설문조사라는 형식적 수단을 통해 주민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설문조사의 내실화를 위한 대안모색이 필요함.

>>> 주민참여사업별 주민참여 방법 비교(2022년)

(단위 : %)



- 한편, 일반참여예산사업의 경우, 주민참여 수단인 공청회,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기구 심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기구 심의에 의한 반영예산액의 비중이 95%(2022년도 6조 1,797억원)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단순히 설문조사나 설명회에 그치지 않고, 설문조사·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서 토의를 거쳐 작성되는 주민의견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특히, 공모제안사업과 일반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방법 및 실적에 대한 주민 의견서가 작성되고, 이를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에 첨부하도록 지방 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음.

▶▶▶ 지방의회 제출 예산안의 첨부 주민의견서 내용(항목) 현황(2022년)

(단위 : %)

단체유형	광역단체		기초단체						
	특별, 광역시	도	시(大)	시(中)	시(小)	군(大)	군(小)	자치구(大)	자치구(小)
공모금액	62.5	33.3	50.0	58.6	75.0	54.5	46.5	66.7	48.5
주민제안방법	87.5	66.7	35.7	27.6	40.6	45.5	52.1	58.3	78.8
우선순위 선정 방법	75.0	33.3	14.3	13.8	31.3	27.3	19.7	44.4	45.5
주민제안건수	75.0	66.7	64.3	65.5	81.3	81.8	76.1	61.1	87.9
주민제안 선정·반영건수	100.0	77.8	85.7	75.9	87.5	72.7	63.4	72.2	90.9
주민의견 수렴방법	75.0	44.4	50.0	31.0	59.4	36.4	50.7	50.0	45.5
주민의견수렴 사업내역	100.0	55.6	64.3	55.2	68.8	63.6	66.2	61.1	81.8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100.0	77.8	57.1	31.0	62.5	36.4	57.7	55.6	66.7
자치단체 검토결과	75.0	33.3	21.4	41.4	65.6	45.5	57.7	55.6	60.6

- 이러한 주민의견서 내용에 포함되는 주민참여예산 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주민제안 선정·반영 건수(14.9%), 주민제안 건수(14.4%)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주민의견수렴 사업내역(13.0%),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11.3%), 주민제안 방법 (10.6%) 등 임.
-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민의견서에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상적 경비로 자치단체장의 운영방침에 해당됨.

나. 주민참여 범위

-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주민이나 자치단체별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인식 범위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예산의 회계적 측면이나 예산이나 사업의 대상이란 측면에서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과정상의 참여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을 것임.
- 예산회계적 측면에서 주민참여의 범위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기금까지를 포괄하는 모든 예산에 대해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회계와는 달리 특정사업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나 기금에서의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는 2% 이내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 전체에 대해 주민참여 범위를 설정할지는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임.

>>> 주민참여예산 편성액의 회계별 비교(2022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주민공모사업		643,896	639,423	4,458	15
공모 외 제안사업		615,580	599,302	16,278	-
일반참여예산사업		6,502,710	6,409,009	93,501	200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사업		162,391	160,892	1,499	-
계	예산	7,924,577	7,808,626	115,736	215
	비중	100	98.54	1.46	0.00

예산이나 사업의 대상이란 측면에서 주민참여의 범위를 살펴보면, 각 자치단체는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주민참여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특히, 주민제안 및 공모사업의 경우, 각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부적정 사업으로 제시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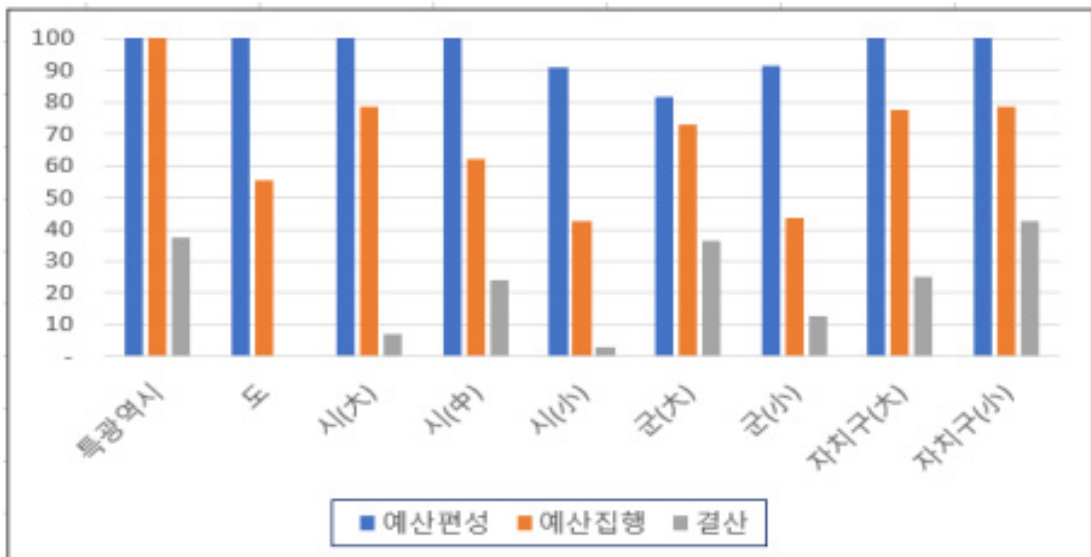
- 국고보조(매칭)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비 사업
-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또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행정운영경비)
 - 법정, 의무적 경비 및 기준경비
- 해당 단체 사무가 아닌 경우(예 : 교육청, 국유지 시설설치 등)
-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 기존 시설 및 특정 기관·단체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 예산편성시 법정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예산편성 기준 및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안)
- 특정 개인·단체만을 지원하거나 특정 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단,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은 예외적 인정)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한편, 예산과정상의 주민참여 활동이란 측면에서 주민참여의 범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편성 단계 외에 집행·결산·평가 단계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가 되어 있음.

- 주민참여예산은 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예산 집행 모니터링과 결산 및 사후적인 사업평가 등도 포함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즉, 예산집행 참여는 사업집행에 공사감독참여, 진척상황 모니터링 등, 결산참여는 주민 등이 결산회의나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의견제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결산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이외에도 사업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예산 편성·집행·결산 이외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예산과정상 주민참여의 범위를 살펴보면, 2022년 2월 기준으로 233개의 자치 단체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모 및 주민제안사업이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이들 사업을 포함한 예산의 집행에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155개, 그리고 결산에 있어서는 49개 자치 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예산과정상의 주민참여 범위를 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 단계 에서의 주민참여 수준은 특별·광역시, 대도시, 자치구는 도와 일반시, 군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결산과정에는 특별·광역시 및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단체유형별 주민참여예산의 참여 범위 비중

(단위 : %)



>>> 예산과정별 주민참여 범위수준(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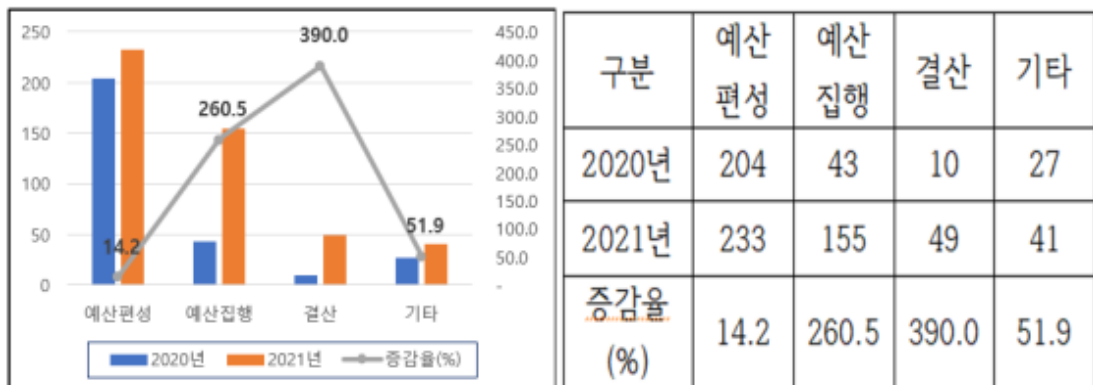
(단위 : 개, %)

구분		단체수	참여범위별 참여단체 비중			
			예산편성	예산집행	결산	기타
광역 단체	특광역시	8	100	100	37.5	12.5
	도	9	100	55.6	-	-
기초 단체	시(大)	14	100	78.6	7.1	-
	시(中)	29	100	62.1	24.1	17.2
	시(小)	32	90.9	42.4	3.0	15.2
	군(大)	11	81.8	72.7	36.4	18.2
	군(小)	71	91.5	43.7	12.7	7.0
	자치구(大)	36	100	77.8	25.0	22.2
	자치구(小)	33	100	78.8	42.4	39.4

- 2020년 이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편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2021년에는 예산집행 및 결산 등의 과정에도 주민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 참여범위의 변화

(단위 : 단체수, %)



4. 주민참여예산 사업 구분

가. 주민참여예산 사업 유형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하여 공표되고 있는 재정공시(예산편)에서는 주민참여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재정공시 : 예산편)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 기준	▶ 예산편성 한도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 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그런데, 각 자치단체는 주민공모사업의 명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용계획에서 나타나고 있는 2023년 예산편성 공모사업의 명칭과 한도액을 살펴보면, 하단의 표에서 보듯이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한도액설정 공모사업의 명칭과 규모(2022년)

(단위 : 억원)

광역 단체	총 한도액	광역단위		기초단위		읍·면·동(마을단위)	
		공모사업 명	한도액	공모사업 명	한도액	공모사업 명	한도액
서울	500	기획제안형	500억원	제안형 (지역단위)			
부산	170	시정참여형	90억원	지역참여형	40억원		
		시정협치형	20억원	지역협치형	20억원		
대구	190	시정참여형	90억원	구·군참여형	40억원 (각 5)	읍·면·동참여형	40억원 (각 0.28)
		청년참여형	10억원				
광주	125	시정참여형	90억원	지역참여형	20억원	동단위계획형	5억원
		정책연구형 (청년참여형)	10억원				
대전	200	시정참여형	50억원	구청참여형	50억원	주민자치형	24억원
		정책숙의형	60억원			마을계획형	16억원
울산	?	주민주도형	?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사업	32억원 주민세 (개인균등) 징수분
경기	500	도정참여형	300억원	지역지원형	100억원		
		민관협치형 (일반)	80억원				
		민관협치형 (청년)	20억원				
충남	150	도정책사업 (일반분야)	40억원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70억원	읍·면·동풀뿌리 소규모사업	20억원
		도정책사업 (청년분야)	20억원				
경북	60	주민제안사업 (공모)	60억원				
경남	170	도정참여형	40억원	도·시·군 연계협력형	50억원 (도부담 30%)	주민자치형	40억원 (도부담 30%)
		청년참여형	20억원				
		생활안전형	20억원				
제주	200 +α	광역사업 (도단위사업 +청년사업)	?	참여사업 (시단위사업)	90억원	지역사업 (읍·면·동사업)	110억원

-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참여의 방식에 따라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자치계획형 사업(2019년 시행)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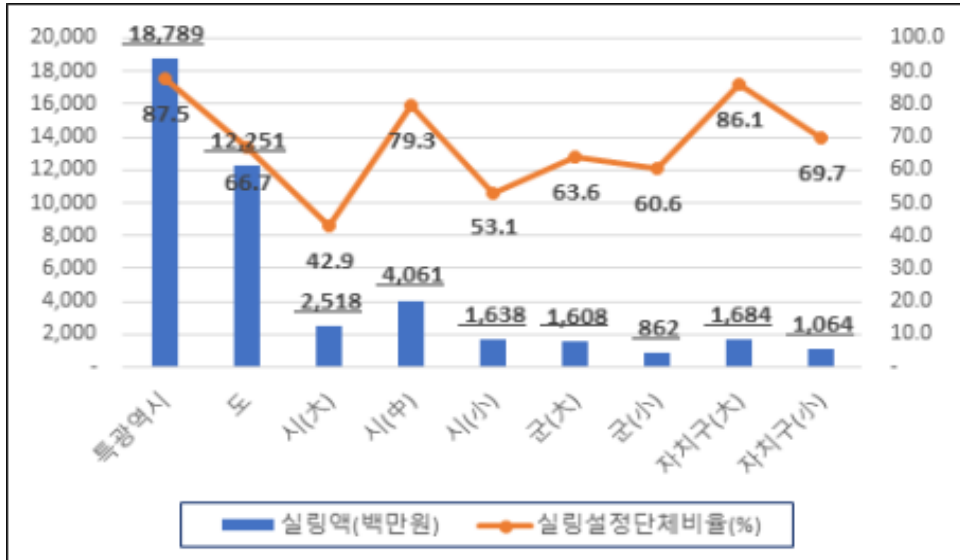
구분	의미	운영방식
공모 사업	▶ 공모사업의 실링을 사전 설정하여 주민공모 실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링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실질적으로 결정(자치단체는 사업의 위법성 판단, 컨설팅 등 보조적 역할만 수행) ▶ 이상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	▶ 실링 설정 + 사업 공모 ▶ 주민참여예산기구 제안 후 주민 직접 투표 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 * 주민이 공개적으로 제안한 사업 (주민 누구나 제안내역을 알 수 있음)
공모 외 제안 사업	▶ 공모사업의 실링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 공모 실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사업우선순위 등 의견을 제시하나, 실질적 우선순위 결정 권한은 자치단체가 가짐 ▶ 이상의 2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	▶ 공모 외 주민제안을 받아 사업부서 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
일반 참여 예산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에 대해 주민참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설정 ▶ 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세부사업별) ▶ 이상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	▶ 사업부서 요구사업에 대해 주민참여 절차를 거쳐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단위로 주민의견서 작성 * 주민참여 절차는 공청회,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자치 계획형 사업	▶ 주민자치회 등에서 사업도출 및 우선 순위 결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 읍·면·동별로 실링을 부여하면 읍·면·동별 지역회의에서 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 * 주민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읍·면·동에 배분하여 활용

나. 공모 및 제안사업(주민주도형 사업)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공모(제안)사업은 자치단체별로 공모사업의 실링을 사전 설정하여 주민공모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주민제안의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링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업임. 이 경우, 자치단체는 사업의 위법성 판단, 컨설팅 등의 보조적 역할만 수행하게 됨.

- 주민의 공모제안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는 제안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수정, 우선순위 결정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관여하며, 주민중심적 의사결정방식을 통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
- 이와 같이 사전 실링을 설정하여 사업 공모가 이루어져 주민이 공개적으로 제안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와 주민참여예산기구 제안 후 주민 직접 투표에 회부할 수 있음.
- 2021년도 주민공모를 실시하기 전에 실링이 설정된 예산규모를 보면, 단체유형별 평균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특별·광역시시는 190억원, 도는 130억원 내외, 중규모시는 40억원, 나머지 자치단체 유형은 20억원 내외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최대액을 기준으로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500~700억원, 시와 자치구는 100~200억원, 군은 60~8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음.
- 사전실링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는 163개 단체로 그 비중이 67.1%인데, 상대적으로 특별광역시와 자치구 참여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좀 더 공모실링을 설정하는 단체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 공모사업의 실링액 및 실링단체비율



≫≫ 공모사업의 실링액 및 설정단체(2022년)

(단위 : 백만원, 개, %)

구분	실링액					실링설정	
	평균	최대	최소	중앙	표준오차	단체수	비율
특·광역시	18,789	70,000	410	14,700	7,785	7	87.5
도	12,251	50,000	6,000	9,382	5,252	6	66.7
시(大)	2,518	10,700	1,750		950	6	42.9
시(中)	4,061	22,000	800	2,600	888	23	79.3
시(小)	1,638	10,000	70	110	472	17	53.1
군(大)	1,608	6,000	500	597	649	7	63.6
군(小)	862	8,000	100		206	43	60.6
자치구(大)	1,684	11,000	320	1,500	317	31	86.1
자치구(小)	1,064	13,771	130	600	415	23	69.7

- 한편, 상술한 공모(제안)사업과 같이 사전에 실링을 설정하지 않고 공모를 실시하는 주민제안사업(공모 외 주민제안사업)은 공모실시에 따른 주민제안을 받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사업우선순위 등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인데, 이러한 제안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권한은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주민참여조직의 역할 수행에 따라 주민제안서의 적극적 검토, 우선순위 결정 등의 의견제시를 통해 예산편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아직 공모사업을 제외한 주민제안사업의 실적은 다소 저조하지만, 주민주도형 사업(공모+공모 외 제안사업)에 대한 주민제안 건수는 인구 7만 미만의 소규모 군을 제외하면, 100~300건, 그리고 이들 제안사업의 사업금액(단체유형별 평균)은 50~200억원 내외로 나타남.

▶▶▶ 제안사업(공모+공모 외 제안)의 건수 및 금액(2022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제안사업수(건)			제안사업금액(백만원)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특·광역시	1,705	6,959	96	235,303	780,647	17,264
도	290	821	16	21,898	1,465,725	9,975
시(大)	286	688	17	15,062	52,232	4,187
시(中)	193	608	7	13,114	91,511	633
시(小)	144	689	2	8,967	44,109	238
군(大)	172	1,006	3	10,826	49,386	800
군(小)	86	1,548	1	6,492	46,625	123
자치구(大)	200	1,714	8	13,510	92,067	109
자치구(小)	100	665	6	4,741	33,855	104

- 특히, 도의 경우 단체유형별 평균액은 219억원이나, 최대액 단체는 1조 4,657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질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1)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사업(적격성)검토 강화

-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주민제안이나 공모사업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업부서의 주민참여 사업 심사기준과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곤란한 주민참여 부적정사업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사업부서에서는 ① 계획 또는 추진 중인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 ② 자체사업비에 의해 추진되는 투자사업, ③ 주민편익을 제고하고 지역공 동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④ 지역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 선행절차가 이행완료되었거나 별도 제도 적용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 ⑥ 지역전역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⑦ 지역의 재난·재해 예방사업, ⑧지역주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이라는 8개 기준 충족 여부를 통해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이 사업부서가 주민의 공모·제안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부적정사업을 선별하는 것은 매년 동일한 이해관계 주민의 요구에 의한 관행적 사업예산배분을 예방할 수 있고, 사업부서의 철저한 책임감을 강화하게 될 것임.

▶▶ 주민참여 사업 심사기준과 부적정 사업예시

주민참여 사업 심사기준	부적정 사업 예시
1. 계획 또는 추진 중인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	▶ 유사·중복되거나 기추진 중인 사업 ▶ 연례적 반복적으로 제안되는 사업 ▶ 사업비 증액요구 사업 ▶ 당해년도 즉시 처리가능 사업(예시 : 대중교통 이용, 불법행위 단속, 환경정비 등) ▶ 기 시행중인 계속사업 ▶ 자자체 자체계획 또는 조례에 의거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예시 : 도시계획도로 개설, CCTV설치 사업 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자체사업비에 의해 추진되는 투자사업	▶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시설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 읍·면·동 기준경비로 편성되는 사업 ▶ 법정·의무적 경비, 용도지정경비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등 국가정책 제안사업 ▶ 예산이 수반되지 않거나 단순생활 민원성의 사업(단순 생활민원사업은 관련부서에 전달하여 별도 관리 추진) ▶ 경비부담 원칙에 위배되거나 해당단체 사무가 아닌 경우 (예 : 교육청, 국유지 시설설치 등)
3. 주민편익을 제고하고 지역공동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주민참여의 가치를 공유 또는 제고 : 주민생활 밀착 또는 읍·면·동풀뿌리소규모사업	▶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 선거법 위반 여지가 높은 사업 ▶ 일반 민원성 제안, 또는 반대여론이 높은 사업 ▶ 재난, 인명사고 등 사고발생 위험이 수반되는 사업

주민참여 사업 심사기준	부적정 사업 예시
4. 지역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소모성·행사성 사업지양 : 1회성 공연, 축제, 행사 등 ▶ 소모성 재료비 및 장비 등의 구입이 목적인 사업 ▶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예 : 총사업비 20억원 초과사업) ▶ 소규모 기반시설 등 설치·유지보수 사업 ▶ 행정관청 설립 및 각종시설물에 대한 단순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예 : 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체육관, 수영장, 문화센터, 도서관 등) ▶ 소규모 분산투자로 투자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사업(예 : 동일구간 예산의 분리편성 사업 등)
5. 선행절차 이행완료 및 별도 제도 적용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	▶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또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 선행절차 : 법 개정, 각종 영향평가, 투자심사, 재정계획 등 ▶ 예산편성 기준 및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안되는 경비나 사업(단, 의회에 예산안 제출 전까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 ▶ 조례, 공공청사 설치기준 등 별도의 기준이나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 ▶ 별도의 심의제도(개별위원회 등)가 있거나 의회 또는 각종위원회 심의시 폐기된 사업 ▶ 사업대상지(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운 사업
6. 지역전역에 파급효과가 있거나 다수 지역주민이 수혜가 가능한 사업 또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제안하는 사업	▶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책방향이나 사업 ▶ 특정인이나 특정기관 또는 일부지역에 경비지출 효과가 귀속되는 수혜성 사업 ▶ 사유지 또는 사설 건축물 등의 유지보수성 사업 ▶ 기존 시설 및 특정 기관·단체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 특정 개인·단체만을 지원하거나 특정 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단,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은 예외적 인정)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 토지보상으로 특정인 수혜를 의도하는 사업

다. 일반참여예산 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은 상술한 공모(제안)사업 및 주민제안사업과 같이 주민이 주도적으로 제안하지 않고 사업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반사업(사업구조화에 따른 세부사업단위)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참여절차를 거치도록 사전에 설정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통계상의 주민참여예산 규모에는 제외됨.

- 이러한 일반참여예산사업은 사업부서 요구사업에 대해 공청회,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의 주민참여 절차를 거쳐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단위로 주민의 견서를 작성하게 됨.

>>> 일반참여예산 총사업비 및 비중(총액기준)(2021년)

(단위 : 백만원, %)

단체유형	사업건수	사업금액	일반회계 대비 비중	자체사업비 대비 비중
특광역시	438	2,391,058	3.1	7.2
도	752	1,143,436	1.3	3.5
시(大)	439	1,107,949	3.6	11.7
시(中)	561	103,965	0.3	1.1
시(小)	542	471,800	2.0	6.2
군(大)	62	127,851	1.7	5.6
군(小)	1,298	249,481	0.7	2.4
자치구(大)	902	850,327	2.8	15.3
자치구(小)	424	56,843	0.4	2.2

-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 시를 제외할 경우 이들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단체비율은 20% 내외 머물고 있음.

>>> 일반참여예산 총사업비 및 비중(해당단체 평균기준)(2022년)

(단위 : 백만원, %)

단체유형	해당사업 단체		사업금액	일반회계 대비 비중	자체사업비 대비 비중
	단체수	비율			
특광역시	6	75.0	398,510	4.2	9.6
도	6	66.7	190,573	1.9	5.3
시(大)	6	42.9	184,658	8.3	27.3
시(中)	8	27.6	12,996	1.1	4.0
시(小)	7	21.9	67,400	8.9	28.4
군(大)	2	18.2	63,926	9.3	30.6
군(小)	15	21.1	16,632	3.4	11.6
자치구(大)	9	25.0	94,481	11.4	61.2
자치구(小)	3	9.1	18,948	4.1	23.8
합계	62	25.5			

라.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세 등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읍·면·동별로 배분하고, 배분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동 주민자치회(기존의 주민 자치위원회) 등에서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참여예산 운영방식임.

- 이러한 읍·면·동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2022년에 206곳으로 파악되는데, 이들 단체 중 사전에 실링을 설정하는 자치단체는 56.3%, 사전에 실링을 설정하지 않는 단체가 43.7%로 나타나고 있음.
- 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별·광역시와 자치구는 사전 실링을 설정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도의 경우는 그 반대임. 대도시와 군도 상대적으로 사전실링 미설정이 많음.

▶▶▶ 읍·면·동별 자치계획 사업예산의 사전 실링 여부(2022년)

구분		광역		기초				합계
		특별·광역시	도	대도시	일반시	군	자치구	
해당 단체수(개)		7	5	13	55	67	59	206
단체수 (개)	사전실링 설정	5	1	6	33	30	41	116
	사전실링 미설정	2	4	7	22	37	18	90
비중 (%)	사전실링 설정	71.4	20.0	46.2	60.0	44.8	69.5	56.3
	사전실링 미설정	28.6	80.0	53.8	40.0	55.2	30.5	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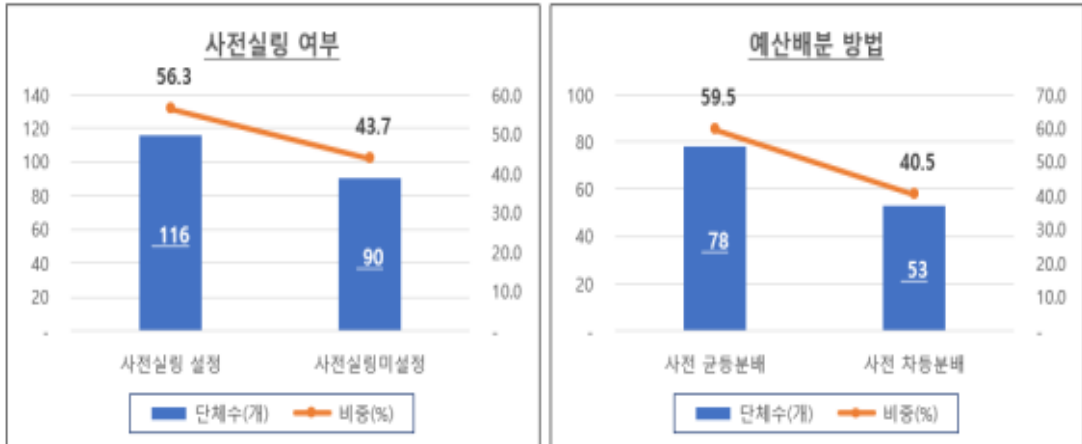
- 읍·면·동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예산배분방법에서 사전분배하는 131개 자치단체 중 읍·면·동에 사전균등분배 방법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자치단체는 78개 (59.5%), 사전차등분배 방식을 채택하는 단체는 53개(40.5%)로 파악되고 있음.
- 기초단체의 경우 대도시의 사전참여분배비율이 높고, 군이 그 다음임.

▶▶▶ 읍·면·동별 예산분배 방법(2022년)

구분		광역		기초				합계
		특별·광역시	도	대도시	일반시	군	자치구	
해당 단체수(개)		5	1	7	38	37	43	131
단체수 (개)	사전 균등분배	4	-	3	23	20	28	78
	사전 차등분배	1	1	4	15	17	15	53
비중 (%)	사전 균등분배	80.0	-	42.9	60.5	54.1	65.1	59.5
	사전 차등분배	20.0	100	57.1	39.5	45.9	34.9	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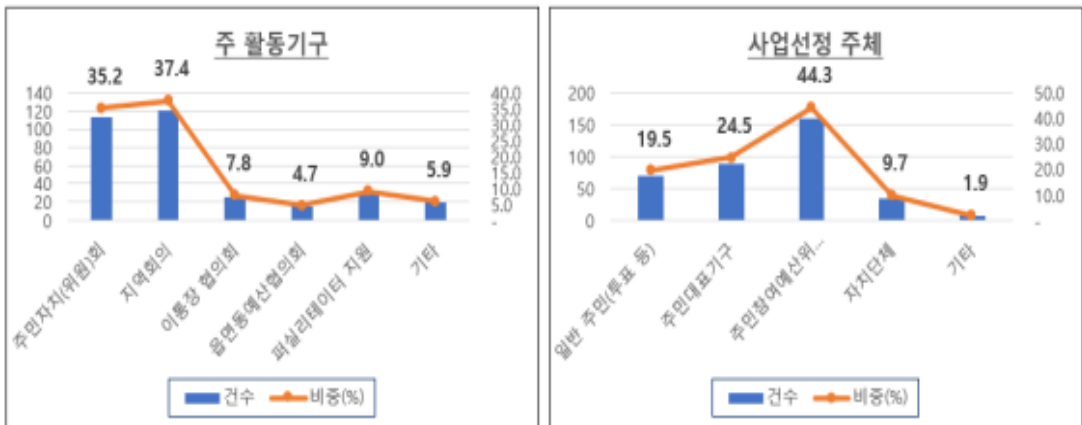
- 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별·광역시와 자치구는 사전균등 분배방식을 채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도의 경우는 거의 사전차등 분배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사업 실링 설정 및 예산분배 방법(2022년)



- 읍·면·동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과정에서 주된 활동기구는 지역회의와 주민자치(위원)회 등이며, 사업선정의 주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대표기구 등으로 나타남.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사업 활동기구 및 선정주체(2022년)



>>> 사업 제안 과정상 주된 활동 기구(2022년)

구분		광역		기초				합계
		특·광역시	도	대도시	일반시	군	자치구	
해당 건수	합계	15	9	22	81	88	106	321
	주민자치 (위원)회	6	2	6	31	26	42	113
	지역회의	4	2	11	32	27	44	120
	이통장 협의회	-	1	2	5	14	3	25
	읍·면·동 예산협의회	-	1	2	5	5	2	15
	퍼실리테이터 지원	3	2	1	5	6	12	29
	기타	2	1	-	3	10	3	19
비중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민자치 (위원)회	40.0	22.2	27.3	38.3	29.5	39.6	35.2
	지역회의	26.7	22.2	50.0	39.5	30.7	41.5	37.4
	이통장 협의회	-	11.1	9.1	6.2	15.9	2.8	7.8
	읍·면·동 예산협의회	-	11.1	9.1	6.2	5.7	1.9	4.7
	퍼실리테이터 지원	20.0	22.2	4.5	6.2	6.8	11.3	9.0
	기타	13.3	11.1	-	3.7	11.4	2.8	5.9

- 사업 제안 과정상 주된 활동기구는 해당건수에서 지역회의, 주민자치(위원)회이며, 비중도 같은 양상을 보임.

>>> 자치계획형 사업선정 주체(2022년)

구분		광역		기초				합계
		특·광역시	도	대도시	일반시	군	자치구	
해당 건수	합계	17	7	23	92	100	120	359
	일반주민 (투표 등)	7	-	5	13	9	36	70
	주민대표 기구	5	1	5	25	25	27	88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5	5	12	42	45	50	159
	자치단체	0	1	-	10	19	5	35
	기타	0	-	1	2	2	2	7
비중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반주민 (투표 등)	41.2	-	21.7	14.1	9.0	30.0	19.5
	주민대표 기구	29.4	14.3	21.7	27.2	25.0	22.5	24.5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29.4	71.4	52.2	45.7	45.0	41.7	44.3
	자치단체	-	14.3	-	10.9	19.0	4.2	9.7
	기타	-	-	4.3	2.2	2.0	1.7	1.9

- 자치계획형 사업선정 주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비중이 44.3%로 크며, 다음은 24.5%의 주민대표기구, 19.5%의 일반주민(투표 등)임.

5. 주민참여 활동 지원

가. 주민참여예산 교육

-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경우 전국적으로 총 1,123회 실시되었으나, 2021년에는 전년보다 46.8% 증가한 1,649회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운영실적이 전년대비 급증한 곳은 자치구이며, 운영실적은 많았던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도와 시·군도 50% 이상의 증가회수를 보이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횟수 비교

(단위 : 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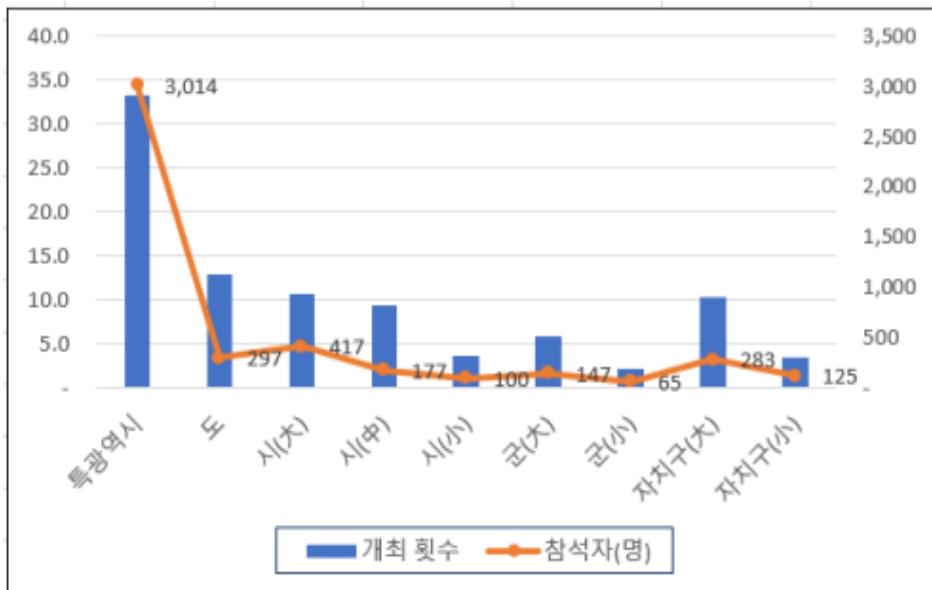
구분	특·광 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합계
2020(a)	250	78	349	160	286	1,123
2021(b)	267	117	542	230	493	1,649
증감률 (b-a)/a	6.8	50.0	55.3	43.8	72.4	46.8

- 자치단체 유형별로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학교 평균 개최회수의 경우 특별·광역시가 33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도 13회, 인구 50만 명 이상 시 11회, 자치구 7회, 일반시 6회, 군 3회의 순으로 나타나며, 특별·광역시의 단체당 평균 참석자는 3,014명으로 가장 높은 실적이거나 군의 경우는 76명으로 저조한 교육실적을 보이고 있음.
- 특별·광역시의 경우 총 267회(참석자 24,109명)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단체당 평균 33회로서 참석자는 3,014명으로 나타나 주민참여예산기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임. 이에 반해 군의 경우는 총 230회(참석자 6,247명) 개최되었으나, 82개 단체당 평균은 3회, 참석자 76명에 불과한 교육실적을 보이고 있음.
-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단체의 비중을 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와

대도시의 경우는 높은 데 반해, 군의 경우는 교육계획 수립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교육실적 비교(2022년)

(단위 : 회, 명)



>>> 주민참여교육 운영실적 비교(2022년)

(단위 : %, 회, 명, 백만원)

단체유형		계획수립 여부	개최 횟수	참석자	예산액
광역	특광역시	100.0	33.4	3,014	39.9
	도	88.9	13.0	297	19.8
기초	시(大)	92.9	10.6	417	8.8
	시(中)	89.7	9.5	177	5.2
	시(小)	75.0	3.7	100	6.6
	군(大)	90.9	5.9	147	3.5
	군(小)	35.2	2.2	65	1.7
	자치구(大)	94.4	10.4	283	4.4
	자치구(小)	84.8	3.6	125	1.7

- 2022년 주민참여예산 교육명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주민참여 예산학교, 온라인예산학교(사이버예산 아카데미), 찾아가는 예산학교, 주민 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및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워크숍 등에서 기본교육, 심화교육, 전문교육 및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검토교육, 주민의견서 작성, 우수사례 교육 그리고 청소년 예산학교(교실), 담당자 실무교육,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홍보 등이 실시되었음.

- 최근 많은 자치단체는 수요자 맞춤형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교육과정을 기본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자율적 주민참여 환경조성을 위한 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제고를, 후자는 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위주 교육을 실시하며, 기본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배부 및 향후 위원 선발 시 우대하고 있음.
 - 교육수요자를 일반시민, 청소년, 청년, 참여예산 위원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세분화하여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교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설 및 권역별로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함.

▶▶▶ 주민참여교육 과정별 내용

교육과정 (단계)	교육대상	교육내용	비고(교육방법)
기본교육	일반시민, 예비참여예산위원	지방예산 및 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 주민참여예산 위원 역할	▶ 순회교육, 온라인 화상교육 등
전문심화 교육 (역량강화)	예산·사업담당 공무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개요, 제외대상 사업, 대민홍보 등	▶ 순회교육, 온라인 화상교육 등
	주민참여예산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설명,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사업대상, 제외대상 사업 등), 참여예산 사례별 학습(예산제안, 사업심의, 모니터링 등)	▶ 순회교육, 온라인 화상교육 등 ▶ 분과위별 워크숍 개최

교육과정 (단계)	교육대상	교육내용	비고(교육방법)
찾아가는 예산학교 (시설, 권역 방문교육)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주민자치회 등)	의제발굴 및 지역회의 운영 방법, 사업부서와 속의 진행 방법	▶ 교육 및 회의 시 퍼실리테이터 지원
	청소년, 청년, 여성 등	맞춤형 사례학습, 사업제안서 작성 등	▶ 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협업 추진

나. 속의 활동 지원 및 정보제공

주민참여 방법에 대한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 속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기구 회의 시 전문가 지원(퍼실리테이터, 코디네이터 등), 사업제안 관련 컨설팅 등 지원, 현장방문 등의 지원을 들 수 있음.

- 속의 활동 지원방법 중 주민참여예산기구 회의 시에 퍼실리테이터 등의 전문가를 지원하는 방법은 광역자치단체와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사업제안 관련 컨설팅 지원 및 현장방문 등의 속의 활동도 특별·광역시와 자치구에서 많이 활용하는 반면에 농촌지역은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의 속의 활동 지원현황(2022년)

(단위 : %)

단체유형		기구 회의 시 전문가 지원 (퍼실리테이터, 코디네이터 등)	사업제안 관련 컨설팅 등 지원제공	기타 속의 활동 지원 (현장방문, 속의공간 등)
광역 단체	특광역시	62.5	87.5	87.5
	도	33.3	33.3	33.3
기초 단체	시(大)	35.7	35.7	78.6
	시(中)	31.0	27.6	51.7
	시(小)	28.1	40.6	43.8
	군(大)	45.5	54.5	36.4
	군(小)	14.1	14.1	32.4
	자치구(大)	33.3	55.6	61.1
	자치구(小)	18.2	18.2	66.7

- 참여예산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공모제안 사업에 대한 숙의·공론화 절차의 강화가 필요한데, 참여예산 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숙의·공론화의 방법에 관한 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례 1) 온·오프라인 공론장 운영 (○○시) :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된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운영하여 제안사업에 대한 주민숙의 활동을 강화
 - 자치단체 담당자 - 전문가 - 시민이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토론회 실시
 - 온라인 공론장(시민참여플랫폼 등 활용)을 통한 시민 찬반투표 또는 자유토론 진행
- (사례 2) 전문 컨설팅단 운영 활성화(○○광역시) : 분야별 전문가로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공모사업 제안자의 입장에서 컨설팅을 지원하여 주민제안의 품질 제고
 - 제안사업 신청단계부터 전문컨설팅 지원으로 공모 진입장벽 해소 및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부적정 기준을 제안자에게 안내
 - 지역회의 운영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 컨설팅을 통해 사업제안 내용을 구체화·수정·보완
- (사례 3) 주민참여지원단 운영(○○시) : 읍·면·동 컨설팅을 통한 사업숙의 강화로 양질의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채택률(주민참여예산 반영) 제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분과별로 위원 2명씩 선발하여 지원단 구성
 - 읍·면·동별 의제 발굴을 위한 상담 및 주민제안사업 검토 컨설팅 실시 등
- (사례 4)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심사 강화(○○시)
 - 사업부서의 제안사업 검토단계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제안자와 참여예산 위원, 사업 부서 공무원 간의 숙의 활동을 통해 제안사업 구체화
 - 주민제안사업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지역주민회)이 담당공무원과 함께 현장확인 실시
- (사례 5) 재검토 기회 부여(○○시) : 제안사업 최종선정 전 지역회의와 사업부서 간 숙의 과정 부재로 인하여 폐기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회를 부여하는 숙의기능 활성화
 - 일부지역·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제안)이지만 분과위원회에서 대체사업 또는 대안사업을 발굴하여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로 변경된 경우

- 일반 민원성 제안(대중교통 이용, 불법행위 단속, 환경정비 등 즉시 추진 사업 등)이지만 분과위원회에서 대체사업 또는 대안사업을 발굴한 경우
- 타 공공기관 이행 사업(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철도공사, 전력공사, 통신사 등)이지만, 타 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 가능한 경우
-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 참여기구의 위원(주민)에 대한 정보제공(공개) 방법을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업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방식과 예산학교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모바일을 활용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정보공개 방법으로 각 자치단체는 기관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별도 구축), 모바일, 이메일, 단톡방, 밴드활용, 예산학교 교재, 주민총회 개최, 사업설명자료 제작배포 등으로 위원과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워크숍 및 위원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도 있음. 이밖에 공식 SNS 등 공개, 사업설명자료 배포, 각종 회의, 언론 보도자료 제공, 공모사업 제안자 설명회 개최, 온라인 설명회 개최 등도 이루어지고 있음.
- 정보제공(공개)의 수준은 주민참여예산 연간운영계획과 실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민총회 운영, 공모 및 제안사업(접수, 검토, 반영), 예산학교 교육내용, 집행(추진) 현황과 반영내용, 의견수렴 결과, 회의록, 사업부서 검토의견 내역, 주민의견서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음.

▶▶ 주민참여기구 위원(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공개 방식(2022년)

(단위 : %)

단체유형		홈페이지 활용	모바일 활용	예산학교	사업설명자료배포	기타
광역 단체	특·광역시	100.0	100.0	87.5	87.5	25.0
	도	100.0	33.3	88.9	55.6	33.3
기초 단체	시(大)	100.0	42.9	92.9	78.6	-
	시(中)	96.6	31.0	72.4	62.1	6.9
	시(小)	87.5	15.6	68.8	68.8	6.3
	군(大)	100.0	9.1	36.4	72.7	18.2
	군(小)	84.5	14.1	21.1	46.5	4.2
	자치구(大)	97.2	63.9	83.3	63.9	11.1
	자치구(小)	93.9	72.7	69.7	72.7	36.4

다. 주민참여예산 홍보

>>> 주민참여예산 홍보실적 비교(2022년)

(단위 : %, 회, 백만원)

단체유형		계획수립 여부	홍보자료 제작여부	온오프라인 홍보 여부	온오프라인 홍보조회수	예산액 (백만원)
광역 단체	특광역시	100.0	100.0	100.0	54,941	25.5
	도	88.9	66.7	100.0	12,531	5.0
기초 단체	시(大)	92.9	92.9	100.0	7,621	6.8
	시(中)	82.8	75.9	89.7	6,479	2.5
	시(小)	84.4	71.9	90.6	504	1.8
	군(大)	90.9	81.8	100.0	577	4.3
	군(小)	59.2	35.2	71.8	868	0.7
	자치구(大)	100.0	97.2	100.0	13,419	5.1
	자치구(小)	87.9	84.8	100.0	1,509	2.0

- 2022년 현재 주민참여예산 홍보 콘텐츠 종류로는 보도자료, 홈페이지,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온·오프라인 홍보 방법 등이 활용하고 있고, 이 밖에 전광판, 육교 현판, 포스터 등도 활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체별 홍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홍보매체	추진 내용	담당부서
온라인 및 방송매체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활용	정보통신과
	SNS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밴드 등	홍보기획관
	언론매체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중앙·지방지)	언론담당관
오프라인	전광판	청사전광판 및 도로 전광판, 버스정보 안내기(BIT) 등	홍보기획관, 교통과
	영상매체	시정홍보 IPTV,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송출, G-버스 내 TV 송출	홍보기획관
	리플릿 포스터 배너	관광서 민원실 및 다중이용시설 비치, 각종 행사시 배포, 각종 직능단체 회의 및 아파트 게시판 활용	시 및 산하기간 대민부서 및 다중이용시설
	각종소식지	시정소식지, 마을 소식지	홍보기획관, 동행정복지센터
	지방세 고지서	지방세고지서 뒷면 활용 홍보	세정과

- 한편, 많은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례 1) 주민제안사업 표지판 설치(○○○시)
 - 추진목적 : 사업 현장에 주민참여예산사업임을 표시하여 제안자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민제안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임을 알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홍보
 - 사업기간 : 11~12월
 - 추진대상 및 운영방법 : 당해 연도에 추진된 주민제안사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후 우수사업 15개소 선정하여 표지판 설치
- (사례 2) 양방향 소통을 통한 환류과정 강화로 투명성 확보
 - 제안접수부터 부서검토까지 제안자의 제안내용 확인 및 소통확대 : 사업검토 및 심사, 채택단계까지 피드백을 통한 소통 과정 구축
 - 자치단체 홈페이지 제안사업 접수현황 및 심사 등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공개

라. 주민참여예산제도 온라인 운영

각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주민 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의 제안에 가장 기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 설문조사, 주민의견서 제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의 심의 결정을 위한 투표에도 활용되고 있음.

-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에는 주민참여예산의 운용조례, 주민제안사업의 선정결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추진현황 및 추진결과를 공시하고 있음.

>>> 홈페이지 주요 기능(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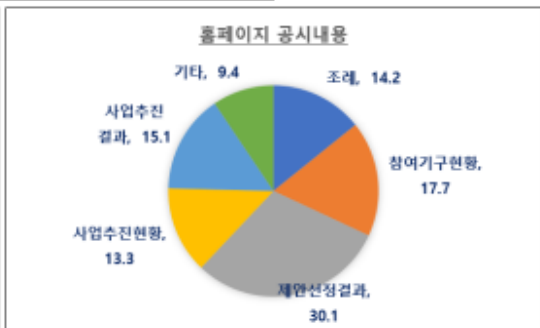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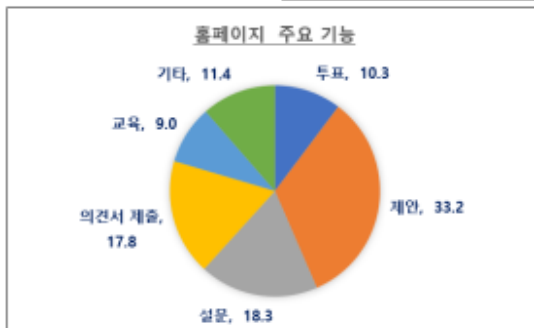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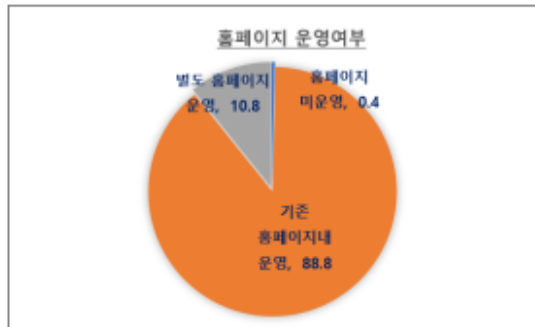
구분	광역		기초				합계
	특별·광역시	도	50만 명 이상 시	50만 명 미만 시	군	자치구	
투표	6 (16.7)	5 (18.5)	5 (12.2)	13 (8.2)	6 (3.7)	28 (14.8)	63 (10.3)
제안	8 (22.2)	9 (33.3)	12 (29.3)	55 (34.8)	57 (35.4)	62 (32.8)	203 (33.2)
설문	5 (13.9)	5 (18.5)	5 (12.2)	35 (22.2)	38 (23.6)	24 (12.7)	112 (18.3)
의견서 제출	4 (11.1)	5 (18.5)	6 (14.6)	28 (17.7)	37 (23.0)	29 (15.3)	109 (17.8)
교육	7 (19.4)	3 (11.1)	6 (14.6)	15 (9.5)	9 (5.6)	15 (7.9)	55 (9.0)
기타	6 (16.7)	- (0.0)	7 (17.1)	12 (7.6)	14 (8.7)	31 (16.4)	70 (11.4)

>>> 홈페이지 공시내용(2022년)

구분	광역		기초				합계
	특별·광역시	도	50만 명 이상 시	50만 명 미만 시	군	자치구	
조례	3 (8.3)	3 (9.7)	6 (11.8)	31 (18.0)	19 (14.3)	33 (13.5)	95 (14.2)
참여기구 현황	7 (19.4)	6 (19.4)	9 (17.6)	32 (18.6)	20 (15.0)	44 (18.0)	118 (17.7)
제안선정 결과	8 (22.2)	8 (25.8)	14 (27.5)	53 (30.8)	52 (39.1)	66 (27.0)	201 (30.1)
사업추진 현황	8 (22.2)	5 (16.1)	9 (17.6)	19 (11.0)	8 (6.0)	40 (16.4)	89 (13.3)
사업추진 결과	6 (16.7)	4 (12.9)	7 (13.7)	20 (11.6)	15 (11.3)	49 (20.1)	101 (15.1)
기타	4 (11.1)	5 (16.1)	6 (11.8)	17 (9.9)	19 (14.3)	12 (4.9)	63 (9.4)

>>> 주민참여예산 관련 웹사이트 운영현황(2022년)

(단위 : %)



III

주민참여예산의 적정 규모



Ⅲ. 주민참여예산의 적정 규모

※ 위 내용은 '22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리방안 개선」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1. 자치단체 유형(안)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해당지역의 특성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운영되지만, 자치단체 별로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 목적, 주민참여 예산범위와 내용, 주민참여 방식과 기제 등이 상이하여 자치단체 유형별로 세부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 있음.
- 2022년도 경우, 주민참여예산편성사업 실적이 없는 지자체는 8개 단체에 불과하지만, 실적이 있는 단체들은 세부적인 주민참여사업별로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즉,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설계는 주민들의 무관심, 실제 운영의 행정낭비, 내실화가 결여된 형식적인 운영 등으로 정책의 추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실성있는 제도로의 발전은 어려울 수 있음.
-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인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어 참여예산제도의 단순·명확화, 자기책임하에 자율적 운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반영될 수 있는 지역특성은 인구밀집도, 인구구조(특히 고령화), 면적과 자연조건, 교통, 지역산업과 주민 직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고려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과 재정여건을 반영한 운영이 필요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된 지역의 유형화가 어느 정도 필요함.
- 따라서 최근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실적을 기준으로 지자체 업무지원을 위한 실무적 참고 자료를 도출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를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유형화 하였음.

>>> 자치단체의 유형

단체 유형		해당단체수	구분기준
광역 단체	특·광역시	8	
	도	9	
기초 단체	시(大)	14	인구 50만 명 이상 시
	시(中)	29	인구 20만~50만 명 미만 시
	시(小)	32	인구 20만 명 미만 시
	군(大)	11	인구 7만 명 이상 군
	군(小)	71	인구 7만 명 미만 군
	자치구(大)	36	인구 30만 명 이상 자치구
	자치구(小)	33	인구 30만 명 미만 자치구

2. 주민참여예산 사업 유형별 예산실적

- 주민참여예산사업 유형별로 예산에 반영된 사업건수와 사업규모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건수는 2019년 19,654건이 2021년 77,613건으로 급격한 증가 후 2022년에 57.8% 감소하여 32,787건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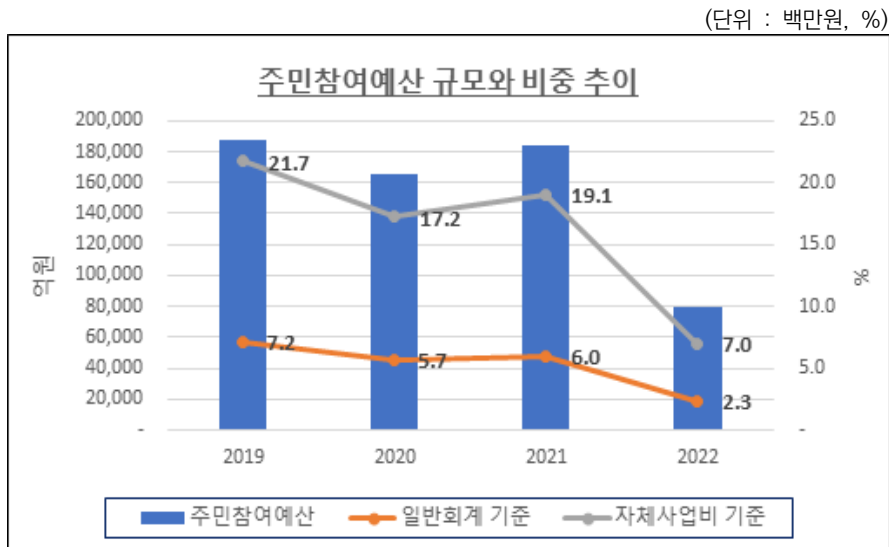
>>> 주민참여예산사업 유형별 예산·사업반영 추이(2022년)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일반참여 예산사업	자치계획형 사업	합계	전년대비 증감률
사업 건수	2019	12,349	7,305			19,654	-
	2020	14,657	8,803	5,913		29,373	49.5
	2021	11,733	5,504	51,356	9,020	77,613	164.2
	2022	12,428	7,877	5,418	7,064	32,787	-57.8
사업 금액	2019	544,636	937,610	16,961,999		18,444,245	-
	2020	758,614	1,108,183	15,233,672		17,100,469	-7.3
	2021	597,587	423,275	17,246,501	189,425	18,456,788	7.9
	2022	643,896	615,580	6,502,710	162,391	7,924,577	-57.1

- 예산 반영 주민참여예산 사업금액은 2019년 18조 4,442억원, 2021년 18조 4,568억원, 2022년 전년대비 57.1% 대폭적인 감소로 7조 9,246억원으로 나타남.
- 2021년과 대비하여 사업건수 및 사업금액이 대폭 감소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유형은 일반참여예산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사업금액이 증가하다가 2022년에 급감함에 따라서 일반회계 대비 금액 비중도 2022년은 전년보다 대폭 감소되었음.
- 일반회계 대비 비중 : 2019년 7.1% > 2021년 6.0% > 2022년 2.3%
- 자체사업비 대비 비중 : 2019년 21.7% > 2021년 19.1% > 2022년 7.0%

▶▶ 주민참여예산 규모 및 일반회계 대비율 추이



※ 주 : 자체사업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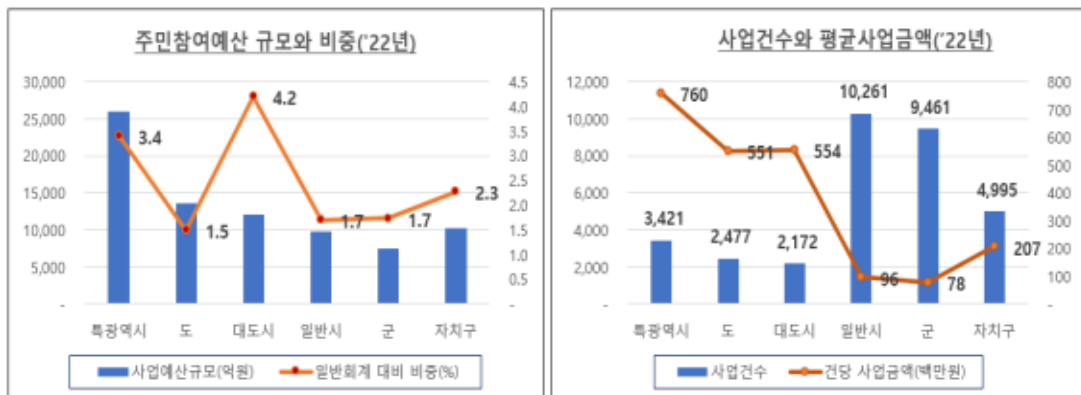
-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사업건수와 사업금액은 각각 32,787건, 7조 9,246억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업건수 비중 : (최고) 일반시(인구 50만 미만 시) 31.3% vs (최저) 대도시(50만 이상 시) 6.6%
- 사업금액 비중 : (최고) 특별·광역시 32.8% vs (최저) 군 9.4%

>>> 자치단체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사업 반영 현황(2022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특별·광역시	도	대도시	일반시	군	자치구	합계
사업 건수	공모 사업	1,693	1,283	818	3,800	2,638	12,428
	공모 외 제안사업	653	42	706	2,636	3,642	7,877
	일반참여 예산사업	438	752	439	1,103	1,360	5,418
	자치계획형 사업	637	400	209	2,722	1,821	7,064
	합계	3,421 (10.4)	2,477 (7.6)	2,172 (6.6)	10,261 (31.3)	9,461 (28.9)	32,787 (100)
사업 금액	공모 사업	170,674	71,026	64,821	124,460	114,991	643,896
	공모 외 제안사업	27,487	136,935	21,691	215,624	204,339	615,580
	일반참여 예산사업	2,391,058	1,143,436	1,107,949	575,765	377,332	6,502,710
	자치계획형 사업	9,067	13,964	8,696	68,307	45,225	162,391
	합계	2,598,286 (32.8)	1,365,361 (17.2)	1,203,157 (15.2)	984,156 (12.4)	741,887 (9.4)	7,924,577 (100)

>>> 자치단체 유형별 주민참여예산 규모와 비중(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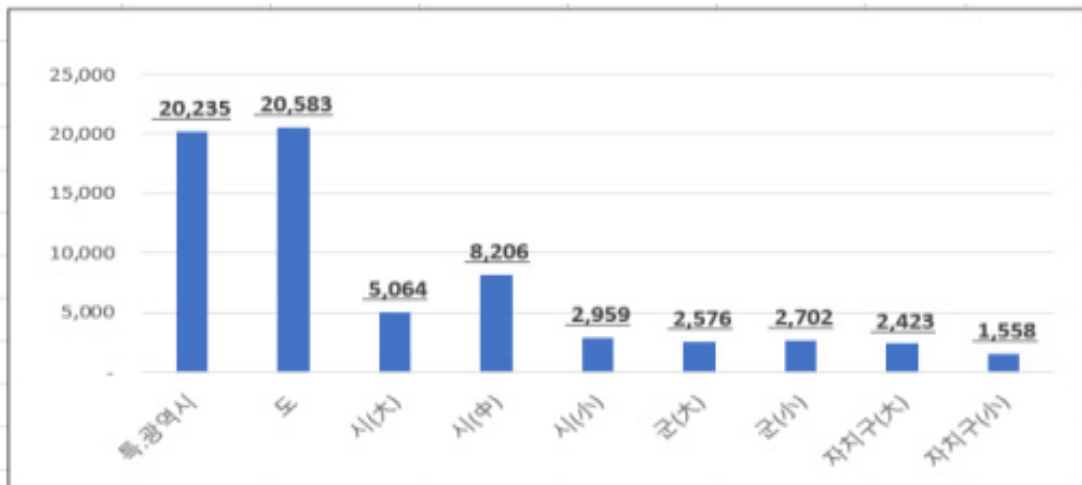
3.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한도액 규모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공모(제안)사업과 읍·면·동 단위 자치계획형 일부 제안사업은 총액에 대한 사전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공모 등 주민제안사업으로 편성 예정인 한도액 총액이 사전에 공개되고 있는 단체 유형은 특별·광역시, 자치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도와 군의 경우 사전공개가 미흡한 수준임.

- 이들 공모 및 제안사업에 대해 사전에 설정한 한도액 규모는 최대 700억원(서울시, 2023년도 500억원 변경), 최소 75백만원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공모액 제시에 불참하는 단체는 79곳(도 3개, 시 21개, 군 41개, 자치구 14개)으로 나타나며, 특히 소규모 군에서 많은 불참이 있음.
- 2021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주민공모사업과 자치계획형 공모사업에 대한 공모액을 사전에 설정하여 제시한 자치단체는 164개 단체로 243개 단체의 72.7%로 나타나며, 여기서 제시하는 단체유형별 공모액은 해당 단체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 공모액을 의미함.

▶▶ 단체유형별 공모참여단체의 평균 공모액 비교

(단위 : 백만원)



>>> 단체유형별 주민참여예산 공모액 및 공모단체 비율

(단위 : 백만원, %)

단체 유형		공모액(공모제안사업+자치계획형사업)					공모 단체율
		평균	최대	최소	중앙	표준오차	
광역 단체	특·광역시	20,235	70,000	410	16,000	7,724	100
	도	20,583	50,000	6,000	17,238	6,248	66.7
기초 단체	시(大)	5,064	10,739	1,000	5,381	1,136	57.1
	시(中)	8,206	50,000	1,500	5,000	2,378	86.2
	시(小)	2,959	10,000	60	2,442	627	65.6
	군(大)	2,576	6,000	250	1,679	753	72.7
	군(小)	2,702	8,500	95	1,700	435	46.5
	자치구(大)	2,423	11,450	320	2,000	374	86.1
	자치구(小)	1,558	13,771	75	1,100	525	72.7

※ 주 : 공모액은 주민공모형 사업과 자치계획형 사업의 각 공모액을 합산한 것임.

- 각 자치단체의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2023년 예산편성 공모사업의 사전한도액은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최고 500억원(서울시, 경기도), 최소 60억원(경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한도액 규모(2022년)

(단위 : 억원)

구분	총한도액	광역단위 공모액	기초단위 공모액	읍·면·동(마을단위) 공모액
서울	500	500		
부산	170	90 + 20	40 + 20	
대구	190	90 + 20	40	40
광주	125	90 + 10	20	5
대전	200	50 + 60	50	24 + 16
울산				32: 주민세 (개인균등) 징수분
경기	500	300 + 80 + 20	100	
충남	150	40 + 20	70	20
경북	60	60		
경남	170	40 + 20 + 20	50 (도부담 30%)	40 (도부담 30%)
제주	200+α	?	90	110

※ 주 : 지역단위별 공모액은 다시 분할되어 사용용도가 제시되는 경우가 있음. 예컨대 대구광역시의 광역단위 공모액 110억원은 사용용도가 시정참여형 사업 90억원, 청년참여형 사업 20억원으로 분리되어 있음.

4. 공모사업비 규모

- 공모사업은 예산 실링(ceiling)을 사전에 설정하고 사업을 공모하는 경우와 예산 실링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 사업을 공모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년도에 공표되었던 2022년도 공모사업의 실링설정 금액은 7,306억원인데, 이에 대한 주민제안사업의 건수와 금액은 39,451건, 7조 1,48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들 제안사업이 2022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건수와 금액은 12,428건, 6,439억원이고, 건당 사업금액은 52백만원으로 나타남.

실링금액보다 예산 반영된 사업금액이 많은 자치단체 유형은 특별·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군, 자치구이고, 도와 50만 명 이하의 일반시는 예산 반영금액이 실링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주민들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는 경우와 주민참여예산 기구(지역회의 등)로부터 제안받는 경우가 있는 공모사업이 자치단체와 협의 및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우선순위 결정은 주민의 직접참여 방식인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도 있으나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음.

>>> 공모사업 실적과 예산 반영 현황(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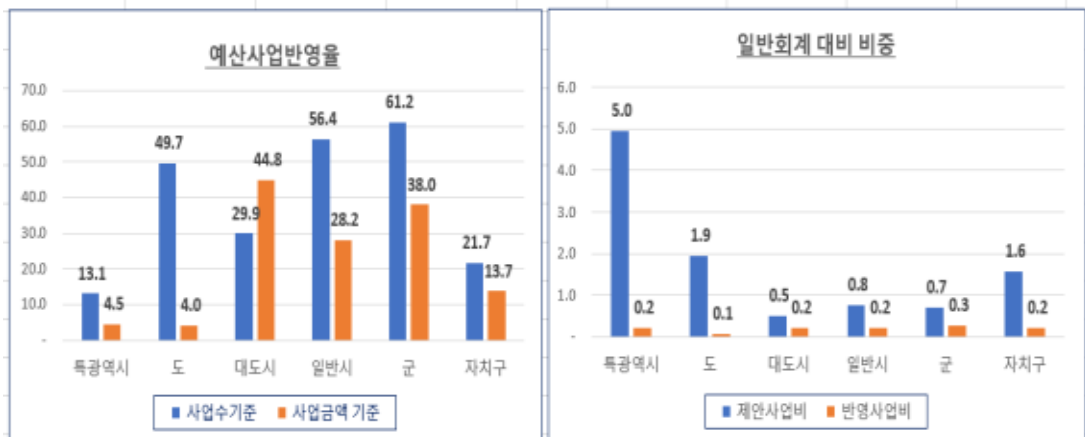
(단위 : 건, 백만원)

자치단체 유형		실링금액	제안사업 실적		'22년 예산 반영		
			사업수	사업금액	사업수	사업금액	건당금액
광역	특·광역시	150,310	12,964	3,771,339	1,693	170,674	101
	도	110,257	2,582	1,773,683	1,283	71,026	55
기초	대도시	35,251	2,735	144,825	818	64,821	79
	일반시	260,172	6,739	441,973	3,800	124,460	33
	군	78,865	4,313	302,719	2,638	114,991	44
	자치구	95,716	10,118	713,674	2,196	97,924	45
	합계	730,571	39,451	7,148,212	12,428	643,896	52

- 공모사업 제안사업에 대한 2022년도 예산 반영 비율은 사업건수 기준으로 31.5%, 사업금액기준으로 9.0%로 나타나는데, 이를 자치단체 유형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업건수 기준 : (최고) 군 61.2% vs (최저) 특별·광역시 13.1%
 - 사업금액 기준 : (최고) 군 38.0% vs (최저) 도 4.0%
-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한 공모사업 제안사업금액과 예산 반영금액의 비중은 각각 2.1%, 0.2%로 나타나는데, 이를 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안사업금액 비중 : (최고) 특별광역시 5.0% vs (최저) 대도시 0.5%
 - 예산 반영금액 비중 : (최고) 군 0.27% vs (최저) 도 0.08%

》》》 공모사업 실적 현황(2022년)

(단위 : %)



- 시·도별로 공모사업의 실적인 제안사업에 대한 2022년도 예산 반영 비율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실령금액 기준 : (최고) 울산 1,925% vs (최저) 경북 33.7%
- 사업건수 기준 : (최고) 전남 89.0% vs (최저) 대구 8.6%
- 사업금액 기준 : (최고) 인천 183.5% vs (최저) 대구 3.9%

>>> 시·도별 공모사업 실적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실링 금액	제안사업 실적		'22년 예산 반영		반영률		
		사업 건수	사업 금액	사업 건수	사업 금액	실링 금액	사업 건수	사업 금액
서울	121,391	6,895	1,067,761	1,175	67,688	55.8	17.0	6.3
부산	18,640	1,131	360,485	309	18,379	98.6	27.3	5.1
대구	23,855	9,793	599,466	842	23,262	97.5	8.6	3.9
인천	44,950	1,755	38,228	799	70,131	156.0	45.5	183.5
광주	19,200	803	101,444	188	10,498	54.7	23.4	10.3
대전	20,630	2,472	2,154,426	494	19,599	95.0	20.0	0.9
울산	3,610	431	187,144	154	69,502	1,925	35.7	37.1
세종	-	116	2,628	18	469	-	15.5	17.8
경기	176,791	6,344	1,822,827	2,387	148,641	84.1	37.6	8.2
강원	119,270	687	142,798	253	18,711	15.7	36.8	13.1
충북	4,500	176	30,001	73	8,607	191.3	41.5	28.7
충남	41,569	2,112	185,270	1,063	31,822	76.6	50.3	17.2
전북	54,140	3,260	113,282	2,493	57,439	106.1	76.5	50.7
전남	18,900	1,358	88,379	1,208	57,234	302.8	89.0	64.8
경북	14,200	339	46,949	117	4,779	33.7	34.5	10.2
경남	39,543	1,518	142,094	738	27,754	70.2	48.6	19.5
제주	9,382	261	65,031	117	9,382	100.0	44.8	14.4
합계	730,571	39,451	7,148,212	12,428	643,896	88.1	31.5	9.0

- 한편, 202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된 주민제안 공모사업비 규모를 해당단체들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특·광역시, 도 규모의 시·군에서 60억원~22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작은 규모의 시와 군 및 자치구는 20억원 내의 공모 실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즉, 예산이 반영된 공모사업비 평균규모는 단체유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건당 평균사업비 규모는 광역자치단체와 대규모 시·군은 50백만원 이상으로, 대다수 기초자치단체는 50백만원 이하 소규모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2년도 자체사업비(일반회계 기준) 예산에 대한 단체유형별 평균공모사업비의 비중은 살펴보면, 광역시·도와 시는 1% 미만으로 나타나지만, 군과 자치구는 1.12~2.89%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단체유형별 공모사업의 사업 수와 사업금액 비교(2022년)

(단위 : 백만원, 건, %)

단체유형	공모사업비 규모				평균 사업수	건당 평균 사업비	자체 사업비 대비 비중	참여 단체 비율
	평균	최대	최소	중앙				
특·광역시	21,334	51,090	469	17,010	212	101	0.51	100
도	7,892	19,475	183	8,582	143	55	0.22	100
시(大)	5,893	33,817	267	4,138	74	80	0.87	78.6
시(中)	2,959	19,559	101	1,349	84	35	0.91	82.8
시(小)	2,138	9,197	80	1,724	71	30	0.90	78.1
군(大)	6,033	31,850	68	1,435	97	62	2.89	81.8
군(小)	1,597	7,118	40	653	48	33	1.11	52.1
자치구(大)	1,725	6,609	320	1,298	39	44	1.12	94.4
자치구(小)	1,120	7,816	60	593	26	43	1.41	97.0

>>> 공모사업의 사업건수와 사업금액 비교



이러한 공모(제안)사업의 질적 향상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주민제안방법이 주민에게 용이하며 사업제안서의 보완 및 충실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대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즉, 주민관심 분야 제안사업을 집중 발굴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참여예산에 대한 만족감 및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를 위한 2022년 자치단체의 개선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시정의 핵심현안으로 주민의 관심이 높고, 사업제안이 용이한 주제를 사전에 기획하여 공모하는 방식으로 전환(서울시)
 - 예시 : (교통분야) 교통 약자(장애인, 노인, 아동 등)와 함께 동행하는 도시만들기
- 지자체가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행정사업 위주가 아닌 지역공동체 결속을 위한 사업 비중의 확대 등(경남)
- 제안단계 컨설팅 실시 : 주민제안사업 전문가 컨설팅 확대·운영(경남, 부산)
- 제안사업의 적격성 검토를 강화 : 예산부서에 집중된 업무를 사업부서의 역할 강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우수 주민제안자에 대한 포상 확대 : 우수제안자에 대한 포상 규정 마련(울산광역시, 천안시, 시흥시, 하남시, 태백시, 영주시 외)

청년참여 강화를 위해 청년분과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청년참여형 사업추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자치단체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일자리, 창업, 교육, 창작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지원형 사업을 발굴을 위한 한도액 신설 : 광주광역시(10억원), 제주도 외
- 청년참여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한도액 인상 : 대구광역시 등
- 청소년참여 예산학교 운영 :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
- 기존방식으로 양적 목표 및 절차 중심에서 사회적 약자, 주민의 관심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개선

5. 공모 외 주민제안사업 규모

- 공모 외 주민제안사업은 공모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중 주민제안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 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어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을 의미함.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상술한 사업공모 방식과 공모 외 주민제안 방식을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공모를 선택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체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

- 2022년도 공모 외 주민제안사업의 건수와 금액은 9,506건, 2조 1,43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들 주민제안사업이 2022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건수와 금액은 7,877건, 6,156억원이고 건당 사업금액은 78백만원으로 나타남.

>>> 공모 외 제안사업 실적과 예산 반영 현황(2022년)

(단위 : 건, 백만원)

자치단체 유형		제안사업 실적		'22년 예산 반영		
		사업수	사업금액	사업수	사업금액	건당금액
광역	특광역시	678	34,388	653	27,487	42
	도	31	124,397	42	136,935	3,260
기초	대도시	1,268	66,045	706	21,691	31
	일반시	3,439	511,054	2,636	215,624	82
	군	3,698	1,379,212	3,642	204,339	56
	자치구	392	28,313	198	9,504	48
합계		9,506	2,143,409	7,877	615,580	78

- 공모 외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2022년도 예산 반영 비율은 사업건수 기준으로 82.9%, 사업금액기준으로 28.7%로 나타나는데, 이를 자치단체 유형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업건수 기준 : (최고) 도 135.5% vs (최저) 자치구 50.5%

- 사업금액 기준 : (최고) 도 110.1% vs (최저) 군 14.8%
-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한 공모 외 주민사업금액과 예산 반영금액의 비중은 각각 0.63%, 0.18%로 나타나는데, 이를 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안사업금액 비중 : (최고) 군 3.23% vs (최저) 특별광역시 0.05%
- 예산 반영금액 비중 : (최고) 군 0.48% vs (최저) 자치구 0.02%

>>> 공모 외 제안사업 실적 현황

(단위 : %)



- 공모사업과 공모 외 주민제안사업 모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양자의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참여예산사업의 실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시·도별로 공모 외 주민제안사업의 신청사업에 대한 2022년도 예산 반영 비율에 대한 특징과 사업건당 평균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업건수 기준 : (최고) 인천 123.8% vs (최저) 울산 22.4%
- 사업금액 기준 : (최고) 인천 128.0% vs (최저) 대구 11.9%
- 건당 사업금액 비교 : (최고) 강원 364백만원 vs (최저) 충남 17백만원

>>> 시·도별 공모 외 제안사업 실적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제안사업 실적		'22년 예산 반영			반영률	
	사업 건수	사업 금액	사업 건수	사업 금액	건당 금액	사업 건수	사업 금액
서울	14	304	14	304	22	100.0	100.0
부산	36	1,882	14	390	28	38.9	20.7
대구	40	23,556	19	2,810	148	47.5	11.9
인천	261	17,528	323	22,436	69	123.8	128.0
광주	-	-	-	-	-	-	-
대전	24	3,153	13	850	65	54.2	27.0
울산	85	-	19	4,643	244	22.4	-
세종	610	16,278	610	16,278	27	100.0	100.0
경기	385	18,833	259	13,552	52	67.3	72.0
강원	186	38,480	92	33,453	364	49.5	86.9
충북	1,008	83,876	469	25,090	53	46.5	29.9
충남	1,159	21,825	1,147	19,897	17	99.0	91.2
전북	489	31,119	267	13,290	50	54.6	42.7
전남	2,411	119,400	2,066	93,287	45	85.7	78.1
경북	570	1,303,369	444	159,790	360	77.9	12.3
경남	2,228	463,806	2,121	209,510	99	95.2	45.2
제주	-	-	-	-	-	-	-
합계	9,506	2,143,409	7,877	615,580	78	82.9	28.7

- 한편, 202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된 공모 외 제안사업비 규모를 해당단체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광역 시·도와 중규모 시는 100억원 내외이나, 나머지 지자체는 60억원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상당수의 자치구는 평균 제안사업비 규모는 3~20억원의 제안실적을 보이고 있음.
- 즉, 예산이 반영된 제안사업비 평균 규모는 단체유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건당 평균사업비 규모는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30~50백만원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런데 도의 경우는 사업건수는 적고, 사업비 규모는 지나치게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안사업의 질적 관리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요구됨.

- 2022년도 자체사업비(일반회계 기준) 예산에 대한 단체유형별 평균제안사업비의 비
중은 살펴보면, 중규모 시와 소규모 군에서 4% 내외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제안사업의 사업 수와 사업금액 비교



≫≫ 단체유형별 제안사업의 사업 수와 사업금액 비교(2022년)

(단위 : 백만원, 건, %)

단체 유형	제안사업비 규모				평균 사업수	건당 평균 사업비	자체 사업비 대비비중	참여 단체 비율
	평균	최대	최소	중앙				
특·광역시	9,162	16,278	15	11,194	218	42	0.22	37.5
도	45,645	124,201	196	12,538	14	3,260	1.27	33.3
시(大)	4,338	12,308	410	1,100	141	31	0.64	35.7
시(中)	12,967	87,321	175	3,744	108	120	3.97	41.4
시(小)	5,002	39,659	20	1,014	112	45	2.11	37.5
군(大)	2,186	3,600	960	1,997	68	32	1.05	27.3
군(小)	5,993	40,625	40	2,325	104	58	4.16	46.5
자치구(大)	304	390	258	284	37	8	0.197	11.1
자치구(小)	2,072	4,037	606	1,823	13	159	2.61	12.1

- 2022년도에 반영된 주민의 공모 및 주민제안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자치단체는 14개에 불과함으로 대다수 자치단체는 주민의 제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그 반영 규모는 자치단체 유형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업은 제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 정책방향과 부합하여 사업부서 검토 결과 추진 가능한 사업인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고 있는 사례도 있음.
- 그러나, 제안내용이 미흡하거나 참여예산사업으로 부적정한 경우, 제안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방향 모색 등 수정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반영 불가 시에 근거, 대안 제시 등이 이루어지는 지자체도 많이 있음.

제안사업에 대한 실무담당자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제안사업의 심사기준(적정성 기준) 및 대상사업의 명확화가 요구됨.

- 주민제안의 대상사업은 주민 편익을 제고하고 지역 공동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단체 소관 사업으로서 ① 지방비 100% 투자 대상 사업(직접 사업), ② 지역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③ 지역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거나 지역 주민 다수에게 수혜가 가능한 사업의 조건 충족이 필요함.
- 그런데, 각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부적정 사업으로 제시하는 사업 예시외에 지역단체별로 고려하고 있는 부적정 사업 예시는 다음과 같음.

>>> 부적정 주민제안사업의 예시

지자체	부적정 사업 예시
서울시	▶ 기존 추진사업(단, 기존사업의 개선제안은 가능)
부산시	▶ 시 전체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하는 도로건설(도로파손 정비사업, 보도사업 제외) ▶ 생산성 없는 소모성 동 단위 축제사업, 사설옹벽 등의 벽화그리기 사업
광주시	▶ 단순 일회성 공연/축제/행사 사업 ▶ 도로개설 및 가로수 보호시설 정비 및 생육환경 사업

지자체	부적정 사업 예시
울산시	▶ 선행절차(법 마련, 예비타당성 조사 등)가 필요한 사업 ▶ 1회성 행사 지원 및 주민 반대 여론이 높은 사업 등
강원도	▶ 총사업비 50억원 초과사업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충남	▶ 공연, 축제 행사성 사업 ▶ 마을포장, 용·배수로 설치공사 등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사업(시·군 주민생활밀착사업 및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의 경우)
경남	▶ 기 시행(추진) 중인 중복사업 ▶ 기획, 인사, 감사, 재무 등 행정 조직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도시계획, 기술심사 등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사업
제주도	▶ 주민갈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불가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 ▶ 별도의 지원 기준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사업과 유사한 사업(자부담률을 낮추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 ▶ 혜택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귀속되는 사업(단체가입 제한 등) ▶ 기 보조사업 등 시설 후 수익이 창출되는 시설물에 대한 단순 보수사업 ▶ 마을(복지)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노인대학 비품·장비 등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 ▶ 차량·기계장비 등 구입 목적 사업, 소모성 재료비 구입 목적 사업 ▶ 사회복지단체·민간단체 법정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 운영비 및 인건비 보조 ▶ 읍·면·동 기준경비로 편성되는 사업, 행정기관 보수·정비 등 행정재정 확보 사업 ▶ 토지 보상이 수반되는 도로 관련 사업(도로 확장 등) ▶ 부서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 순위가 있는 경우(주차장 복층화 등) ▶ 재난 및 인명사고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남양주시	▶ 공연·축제, 마을 표지석 설치 등 일회성 사업 ▶ 청사 신축, 개·보수 및 CCTV 설치 등 연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사업 ▶ 시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사업 중 특정지역 사업만 재정투입이 요구되는 사업 ▶ 예산편성과 관련 없는 단순한 민원사항 건의
시흥시	▶ 선거법 위반 사항 ▶ 장기검토과제 : 중기지방재정계획,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영향평가, 재정투자심사제도 등 사전절차 이행사업 - 예시 : 다목적 체육관·수영장·문화센터·도서관·주민센터 등 건립, 공영주차장·신규공원·육교 등 설치 ▶ 3년간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한 사업 ▶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중복사업(동일지역 내 동일사업 불가) ▶ 사유지 내의 사업 (불가피한 경우 토지소유자 전원의 사전동의 필수 및 향후 토지·건물 등의 관리주체·방안 제출) ▶ 일반 민원성 제안, 찬반 대립 민원이 존재하는 사업 - 예시 : 대중교통 이용, 주정차 단속, 불법행위 단속, 환경정비 등

지자체	부적정 사업 예시
파주시	▶ 동일 구간 금액별 분리 편성사업 ▶ 사업대상지(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운 사업 ▶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지역단위 특색사업[자치계획형]-주민자치회 실행사업 제외) ▶ 소규모 기반시설 등 설치·유지보수 사업
이천시	▶ 시 자체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도시계획도로개설 등)
천안시	▶ 정책적 결정 등 중장기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 - 20억 이상 투자사업 및 1억 이상 행사성 경비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대상사업
진주시	▶ 국가정책 제언 성격의 사업 또는 추상적 사업 ▶ 소관 사업부서 특정이 곤란한 복합적 제언 사업(분리 검토 가능)
김해시	▶ 시 조례 또는 자체계획에 의해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CCTV 설치 사업,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김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 등 ▶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비예산사업 및 단순생활민원 사업(관련부서 별도 처리) ▶ 축제 및 행사성 프로그램(공동체 활성화, 지역문화 등 특화사업은 예외적 적용) ▶ 20억 이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 등
울주군	▶ 위탁·보조사업 ▶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일반 민원성격의 사업
보령시	▶ 토지보상 문제, 각종규제 등 단년도 추진 곤란 사업(계속 사업) ▶ 특정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위탁사업, 선진지 견학, 역량강화 워크숍 등) ▶ 민원이 존재하거나 의회 또는 각종 위원회 심의시 제외된 사업 ▶ 사유지 또는 사설 건축물 등 유지보수성 사업
남원시	▶ 지방보조금 대상사업
나주시	▶ 대규모 투자사업 (총사업비 1억 5천만원 초과) ▶ 주민숙원사업적 성격 사업 ▶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지방보조금)
완도군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연례 반복적으로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비의 증액 요구

6. 일반참여예산 규모

일반참여 예산사업은 사업부서 요구사업에 대하여 공청회, 설문조사 또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견서가 작성되고 예산에 반영되는 방식임.

- 2022년 예산에 반영된 일반참여예산사업의 건수와 사업금액은 각각 5,418건, 6조 5,027억원으로 나타나는데, 예산 반영 수단인 공청회,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기구 심의로 구분하여 주민참여예산기구 심의에 의한 반영예산액의 비중이 95%(6조 1,797억원)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치단체 유형별로 2022년 예산에 반영된 일반참여예산사업의 사업금액과 그 비중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특별·광역시 : 2조 3,911억원, 36.8%
 - 도 : 1조 1,434억원, 17.6%
 -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시) : 1조 1,079억원, 17.0%
 - 일반시(인구 50만 미만 시) : 5,758억원, 8.9%
 - 군 : 3,773억원, 5.8%
 - 자치구 : 9,072억원, 14.0%
- 대부분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2022년도 예산 반영 규모는 6조 1,797억원인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에서 활용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식으로 예산편성 전 사업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검토·심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임. 공청회와 설문조사가 실시를 통하여 예산에 반영되는 비중은 5% 수준임.

>>> 일반참여예산사업 실적과 예산 반영 현황(2022년)

(단위 : 건, 백만원)

자치단체 유형별	사업건수	'22년 예산 반영 실적			
		사업금액 (a+b+c)	예산 반영 수단		
			공청회 (a)	설문조사 (b)	주민참여예산기구 심의(c)
특별·광역시	438	2,391,058	26,729	35,647	2,328,682
도	752	1,143,436	-	-	1,143,436
대도시	439	1,107,949	-	-	1,107,949
일반시	1,103	575,765	85,062	3,382	487,321
군	1,360	377,332	3,675	156,046	217,611
자치구	1,326	907,170	12,433	6	894,731
합계	5,418	6,502,710 (100)	127,899 (2.0)	195,081 (3.0)	6,179,730 (95.0)

- 이러한 일반참여예산 사업의 경우 예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자체사업 중심으로 검토·심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의견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고 있음.
- 2022년 예산에 반영된 일반참여예산사업 실적(6조 5,027억원)을 참여수단별 비중 및 자치단체 유형별 사업건당 금액과 일반회계 대비 비중을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일반참여예산사업 실적 현황



- 참여수별 반영 예산 비중 : 공청회 2%, 설문조사 3%, 주민참여기구 심의 95%
- 사업건당 평균금액 : (최고) 특별광역시 5,459백만원 vs (최저) 군 277백만원
- 일반회계 대비 비중 : (최고) 대도시 3.9% vs (최저) 군 0.9%
- 시·도별로 일반참여예산사업에 대한 2022년도 예산 반영 사업건수, 사업금액 및 건당 평균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사업건수 비교 : (최고) 서울 5,418건 vs (최저) 부산 1건
 - 사업금액 비교 : (최고) 대전 1조 96억원 vs (최저) 부산 2억원
 - 건당 사업금액 비교 : (최고) 대구 6,498백만원 vs (최저) 전남 13백만원

▶▶▶ 시·도별 일반참여예산사업 실적(2022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사업건수	'22년 예산 반영 실적			
		사업금액 (a+b+c)	공청회 (a)	설문조사 (b)	주민참여예산 기구 심의(c)
서울	749	832,814	1,100	500	831,214
부산	1	200	-	-	200
대구	94	610,854	-	-	610,854
인천	44	22,646	16,166	6	6,474
광주	134	56,682	21,535	35,147	-
대전	327	1,009,616	361	-	1,009,255
울산	451	871,772	-	-	871,772
세종	-	-	-	-	-
경기	709	921,029	-	-	921,029
강원	235	81,677	10,460	6,079	65,138
충북	753	681,822	-	-	681,822
충남	767	733,455	13,849	1,370	718,236
전북	294	255,456	60,753	-	194,703
전남	465	5,907	-	-	5,907
경북	67	98,364	470	-	97,894
경남	328	320,416	3,205	151,979	165,232
제주	-	-	-	-	-
합계	5,418	6,502,710	127,899	195,081	6,179,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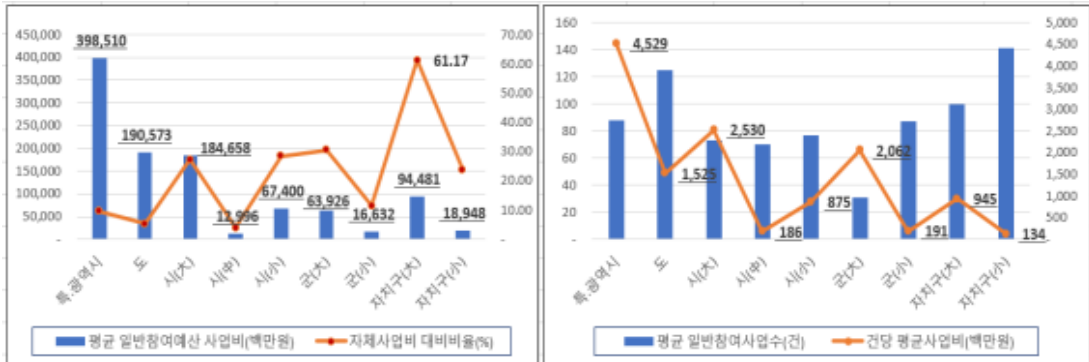
- 2022년 예산에 반영된 전체 주민참여 예산액에서 약 95%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일반주민참여예산 사업비를 해당단체들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광역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규모 시는 1,800~4,000억원의 사업비 규모를 보이고, 큰 자치구는 950억원, 나머지 자치단체는 150~67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즉, 예산 반영된 일반참여예산 사업비의 건당 평균사업비 규모는 전술한 제안사업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광역시·도 및 규모가 큰 시·군은 15억원 이상임. 그리고 나머지 자치단체도 2억원 내외로 나타나고 있음.
- 2022년도 자체 사업비(일반회계 기준) 예산에 대한 단체유형별 평균 일반참여예산 사업비의 비중은 살펴보면, 중규모 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는 매우 높은 비중(11.6~61.17%)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단체유형별 일반참여예산 사업의 사업 수와 사업금액 비교(2022년)

(단위 : 백만원, 건, %)

단체유형	일반참여예산사업비 규모				평균 사업 건수	건당 평균 사업비	자체 사업비 대비비중	참여 단체 비율
	평균	최대	최소	중앙				
특·광역시	398,510	997,423	1,600	327,732	88	4,529	9.60	75.0
도	190,573	360,078	97,894	149,821	125	1,525	5.28	66.7
시(大)	184,658	482,092	4,187	96,422	73	2,530	27.28	42.9
시(中)	12,996	60,753	7	4,353	70	186	3.98	27.6
시(小)	67,400	301,717	4,229	39,202	77	875	28.41	21.9
군(大)	63,926	106,356	21,495	63,926	31	2,062	30.57	18.2
군(小)	16,632	151,979	41	3,155	87	191	11.55	21.1
자치구(大)	94,481	818,558	6	1,492	100	945	61.17	25.0
자치구(小)	18,948	25,275	11,832	19,736	141	134	23.83	9.1

▶▶▶ 일반참여예산 사업의 사업 수와 사업금액 비교



광역시·도 및 대규모 시를 제외할 경우 일반참여예산 사업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자치단체 비율은 대단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의 사례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과도한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대형사업 중심의 심의 등 형식적 운영이 있음.
- 공청회 등 재정사업에 대한 주민의 공론화가 없이 사업부서가 주도하고 소수의 주민 참여예산위원 의견이 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일반참여예산 사업실적이 주민참여예산에 과잉 반영되어 주민참여예산 실적이 현실과 달리 왜곡될 수 있으므로 실적에서 제외하든지, 주민의견 반영의 구체화를 위한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7. 자치계획형 참여예산 규모

자치계획형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세 등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읍·면·동별로 배분하고, 배분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동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참여예산 운영방식임.

- 자치계획형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읍·면·동별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가 그 기능을 수행함.
- 자치계획형 사업은 예산의 실링이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세 일정분으로 정해지고, 읍·면·동별로도 배분액이 정해지는 특성이 있음.
- 이러한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예산 실링(ceiling)을 사전에 설정하는 경우와 미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2022년도 자치계획형 사업에 대한 실링설정 금액은 1,764억원인데, 이에 대한 주민자치회 등을 통한 제안사업의 건수와 금액은 12,214건, 3,73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들 제안사업이 2022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건수와 금액은 7,064건, 1,624억원이고 건당 사업금액은 23백만원으로 나타남.
- 건당 사업금액을 자치단체 유형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건당금액 비교 : (최고) 인구 50만 이상 시(대도시) 42백만원 vs (최저) 자치구 13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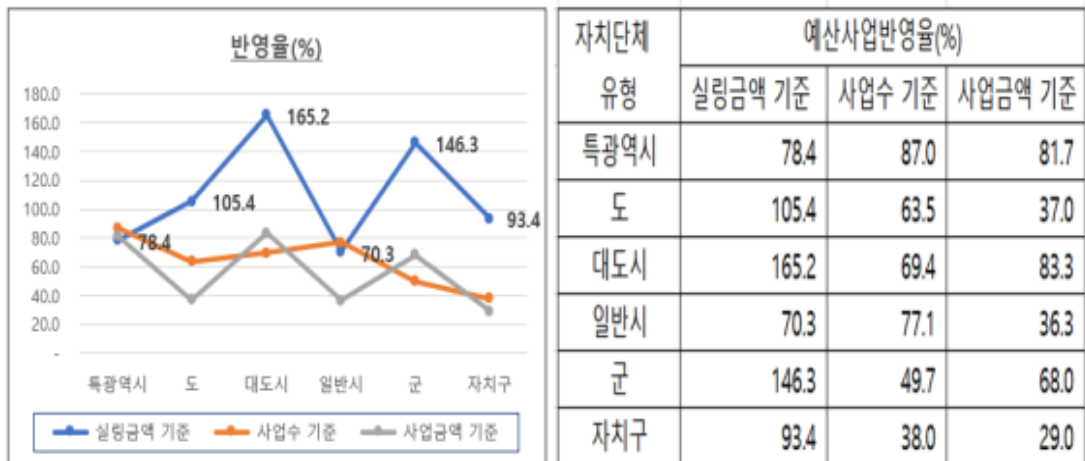
≫≫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사업 실적과 예산 반영 현황(2022년)

(단위 : 건, 백만원)

자치단체 유형		실링 금액	주민자치회 등 주민제안 실적		'22년 예산 반영 실적		
			사업건수	사업금액	사업건수	사업금액	건당금액
광역	특·광역시	11,569	732	11,104	637	9,067	14
	도	13,243	630	37,768	400	13,964	35
기초	대도시	5,264	301	10,439	209	8,696	42
	일반시	97,109	3,532	188,082	2,722	68,307	25
	군	30,907	3,667	66,532	1,821	45,225	25
	자치구	18,343	3,352	59,111	1,275	17,132	13
합계		176,435	12,214	373,035	7,064	162,391	23

- 2020년 읍·면·동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경우 총 6,420억원이 예산으로 반영되었으며 사업제안 대비 반영비율은 자치구 유형의 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2022년도 예산 반영 비율은 사업건수 기준으로 57.8%, 사업금액기준으로 43.5%로 나타나는데, 이를 자치단체 유형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업건수 기준 : (최고) 특별광역시 87.5% vs (최저) 군 49.7%
 - 사업금액 기준 : (최고) 특별광역시 81.7% vs (최저) 자치구 29.0%

▶▶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사업 실적 현황



- 시·도별로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실적인 제안사업에 대한 2022년도 예산 반영 비율과 사업건당 사업금액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업건수 기준 : (최고) 광주, 세종 100% vs (최저) 대구 7.6%
 - 사업금액 기준 : (최고) 강원 123.3% vs (최저) 대구 3.7%
 - 건당 금액 비교 : (최고) 제주 45백만원 vs (최저) 대구, 인천 1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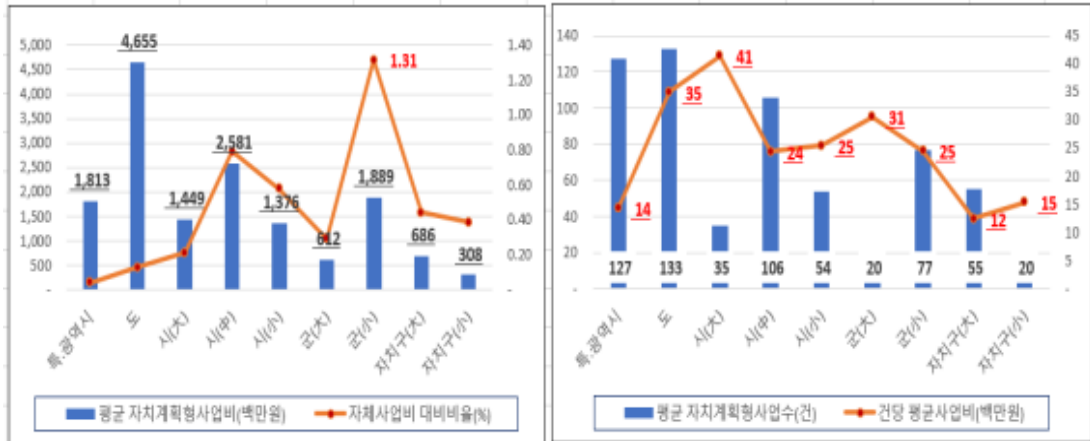
▶▶▶ 시·도별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사업 실적(2022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실링 금액	주민자치회 등 주민제안 실적		'22년 예산 반영 실적		
		사업 건수	사업 금액	사업 건수	사업 금액	건당 금액
서울	7,342	531	8,989	410	6,275	15
부산	1,785	193	4,429	102	1,707	17
대구	4,690	2,091	42,635	158	1,563	10
인천	7,620	687	7,367	647	6,542	10
광주	500	9	382	9	382	42
대전	6,286	396	5,876	385	5,620	15
울산	1,720	270	2,140	127	5,048	40
세종	1,469	120	1,303	120	1,303	11
경기	67,907	1,563	119,599	1,007	33,686	33
강원	6,300	323	5,176	215	6,382	30
충북	5,545	675	31,138	633	16,969	27
충남	4,398	598	37,688	337	11,502	34
전북	16,906	1,431	19,805	1,419	18,846	13
전남	10,849	272	9,715	258	9,597	37
경북	3,500	474	14,145	193	5,970	31
경남	18,775	2,233	30,985	804	20,156	25
제주	10,843	348	31,664	240	10,843	45
합계	176,435	12,214	373,035	7,064	162,391	23

- 한편,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된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을 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 보면, 평균사업비 규모나 건당 사업비 규모는 자치단체 간에 큰 차이는 없음.

>>> 자치계획형 사업의 사업 수와 사업금액 비교



>>> 단체유형별 자치계획형 사업의 사업 수와 사업금액 비교(2022년)

(단위 : 백만원, 건, %)

단체 유형	자치계획형 사업비 규모				평균 사업수	건당 평균 사업비	자체 사업비 대비 비중	참여 단체 비율
	평균	최대	최소	중앙				
특·광역시	1,813	3,203	382	1,303	127	14	0.04	62.5
도	4,655	10,843	1,276	1,845	133	35	0.13	33.3
시(大)	1,449	3,717	45	919	35	41	0.21	42.9
시(中)	2,581	18,645	55	761	106	24	0.79	65.5
시(小)	1,376	4,829	20	459	54	25	0.58	43.8
군(大)	612	1,582	68	300	20	31	0.29	54.5
군(小)	1,889	8,754	95	1,550	77	25	1.31	31.0
자치구(大)	686	3,143	35	350	55	12	0.44	44.4
자치구(小)	308	2,140	36	129	20	15	0.39	60.6

-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사업의 재원은 주로 주민세(개인균등할)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읍·면·동 단위에 지역회의(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하여 제도가 운용되고 있음.

>>> 주민세 징수액과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 규모 비교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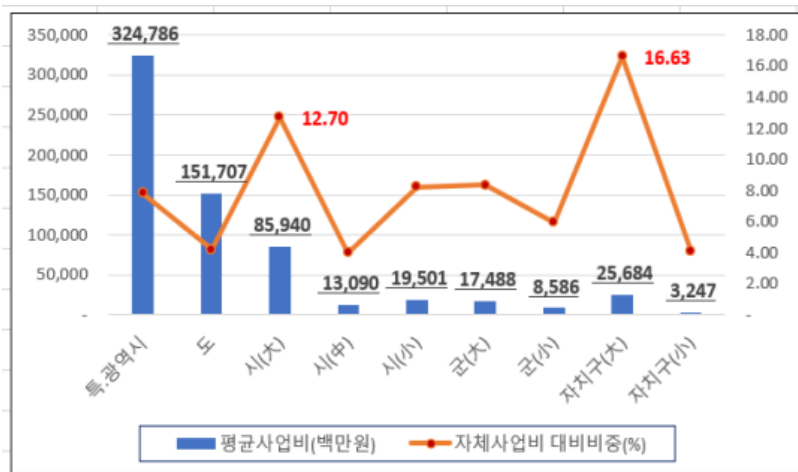
구분	2021년 주민세징수액 (개인균등분)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	
		한도액	반영 예산
서울	18,189	8,799	9,673
부산	12,519	1,466	3,826
대구	9,064	3,400	3,394
인천	10,611	5,870	4,163
광주	5,481	560	692
대전	5,439	2,854	2,596
울산	4,356	1,610	4,818
세종	940	50	860
경기	50,660	31,947	29,958
강원	6,363	3,300	4,878
충북	6,644	6,600	9,935
충남	7,683	13,793	14,019
전북	7,162	14,244	16,832
전남	7,524	8,250	46,913
경북	6,658	3,100	10,528
경남	13,202	13,574	15,340
제주	1,421	11,000	11,000
합계	173,917	130,417	189,425

8. 주민참여예산 총사업비 규모

- 2022년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의 실적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동일 유형 내의 자치단체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편성 실적이 없는 지자체는 8개 단체(영천시, 철원군, 화순군, 장성군, 군위군, 청송군, 고령군, 성주군)임.
 - 주민참여예산 실적 금액이 자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6%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자치구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지만, 특히 서울시 본청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 참여예산 제도가 자치구의 추가적 시비 확보방안으로 변질되어 재정의 책임성·효과성이 저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즉, 서울시 자치구 내 참여예산제도의 기반과 역량이 구축되어 있으나 시 재정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자치구 단위 참여예산의 자율적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단체유형별 주민참여예산 평균사업비와 자체사업비 대비 비중 비교



≫≫ 단체유형별 주민참여예산 총사업비 규모 비교

(단위 : 백만원, 건, %)

단체 유형		주민참여예산 총사업비 규모				자체사업비 대비비중	참여단체 비율
		평균	최대	최소	중앙		
광역	특.광역시	324,786	1,016,808	7,049	64,966	7.82	100
	도	151,707	374,977	183	148,831	4.21	100
기초	시(大)	85,939	494,400	799	5,807	12.7	100
	시(中)	13,091	89,647	101	5,254	4.01	100
	시(小)	18,892	305,322	153	4,384	8.22	96.9
	군(大)	17,489	115,985	138	3,600	8.36	100
	군(小)	7,740	154,455	40	3,294	5.96	90.1
	자치구(大)	25,684	822,686	320	1,874	16.63	100
	자치구(小)	3,247	30,638	86	1,203	4.08	100

- 주민참여예산 사업 유형별로 평균사업비가 자체사업비(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주민참여사업 유형별 평균사업비의 자체사업비에 대한 비중 비교(2022년)

(단위 : 백만원, %)

단체유형		자체사업비 예산규모	자체사업비 대비 비중				
			주민공모 사업	주민제안 사업	일반참여 예산사업	자치계획형 사업	주민참여예산 총사업비
광역	특·광역시	4,152,417	0.51	0.22	9.60	0.04	7.82
	도	3,606,722	0.22	1.27	5.28	0.13	4.21
기초	시(大)	676,807	0.87	0.64	27.28	0.21	12.70
	시(中)	326,646	0.91	3.97	3.98	0.79	4.01
	시(小)	237,217	0.90	2.11	28.41	0.58	8.22
	군(大)	209,112	2.89	1.05	30.57	0.29	8.36
	군(小)	143,970	1.11	4.16	11.55	1.31	5.96
	자치구(大)	154,460	1.12	0.20	61.17	0.44	16.63
	자치구(小)	79,522	1.41	2.61	23.83	0.39	4.08

9. 단체유형별 주민참여예산의 적정 규모

- 단체 유형별로 2022년 주민참여예산 실적을 기준으로 새로운 범주로 규정한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주민참여사업의 주재원이 되는 자체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적정 규모를 산출하되, 지역여건이나 특성을 반영한 재량성이 요구되므로 최대~최소의 범위를 설정한 주민참여예산 적정 규모를 제시하기로 함.

가. 유형 구분

- 주민참여예산 사업 유형별 평균예산규모는 사업 유형별로 해당(참여)단체와 단체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참여예산 실적이 있는 단체만을 대상으로 산정함. 이러한 방식으로 단체유형별 주민참여예산의 총규모를 3가지 범주(최협의, 협의, 광의)로 구분하여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광의 : 공모사업, 제안사업, 자체계획사업, 일반참여사업
- 협의 : 공모사업, 제안사업, 자체계획사업
- 최협의 : 공모사업, 제안사업

나. 주민참여 범주별 예산 규모

- 여기서 협의의 주민참여예산은 주로 주민이 주도하는 것이지만, 광의의 주민참여예산은 협의의 주민참여예산에 실무부서가 주도하면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일반참여 예산을 포함한 것임.

>>> 주민참여 사업별 및 범주별 예산규모(2022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주민참여예산 규모				주민참여예산 총규모		
	공모사업 (A)	제안사업 (B)	자체계획 사업(C)	일반참여 사업(D)	최협의 (A+B)	협의 (A+B+C)	광의 (A+B+C+D)
특·광역시	21,334	9,162	1,813	398,510	24,770	25,904	324,786
도	7,892	8,385	4,655	190,573	10,687	12,238	116,584
시(大)	5,893	4,338	1,449	184,658	6,179	6,801	85,940
시(中)	2,959	12,967	2,581	12,996	7,814	9,505	13,090
시(小)	2,138	5,002	1,376	67,400	3,660	4,282	19,501
군(大)	6,033	2,186	612	63,926	5,532	5,866	17,488
군(小)	1,597	5,993	1,889	16,632	4,457	4,839	8,586
자치구(大)	1,725	304	686	94,481	1,809	2,063	25,683
자치구(小)	1,120	2,072	308	18,948	1,337	1,524	3,246
참여단체수	192	79	111	62	228	233	235
참여단체비율	79.0	32.5	45.7	25.5	93.8	95.9	96.7

※ 주 : 단체유형별 사업예산의 단체당 평균규모는 해당(참여)단체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값이기 때문에 참여단체의 차이로 사업 유형 간 합산액과 범주별 예산액은 일치하지 않음.

- 그런데, 일반참여예산 사업의 실적을 주민참여예산 규모에 포함하게 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① 일반참여예산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대함. 즉, 광의의 주민참여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참여예산의 규모가 협의의 주민참여예산 규모와 비교할 경우 11배 이상이 되거나 광의의 주민참여예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일반참여예산의 비중이 70%이상인 자치단체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② 일반참여예산의 실적(예산편성 반영)은 일부 자치단체에만 해당하여 대다수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활동실적으로 보기 곤란함. 예컨대, 2022년 예산의 경우 일반참여예산 실적은 62개 자치단체만이 해당함.
 - ③ 일반참여예산 사업은 다른 주민참여예산 사업 보다 사업건수도 적고, 건당 사업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심사가 사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업일 수 있음. 이로 인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써 주민참여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④ 과도한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대형사업 중심으로 주민참여기구의 형식적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음.
 - ⑤ 공청회 등을 통한 일반참여 재정사업에 대한 주민의 공론화가 없이 사업부서가 주도하고 소수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일반참여예산의 사업실적이 주민참여예산에 과잉 반영되지 않도록 주민참여 예산 규모를 일반참여예산을 제외한 협의의 개념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다. 협의의 주민참여예산 규모

- 각 단체유형별로 특이값(outlier)을 제외하고서 협의의 주민참여예산 규모(평균, 최고, 최저, 중앙)를 구하고, 평균값의 주민참여예산이 자체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면 다음과 같음.
 - 현재 주민참여예산은 일반회계에 대한 비중을 통하여 그 규모를 상호 비교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회계가 지자체의 핵심적인 사업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런데, 각 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의 비중을 통하여 그 규모의 적정성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가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방비로 추진되는 자체사업에 국한되기 때문임(본 보고서 제2장 주민참여의 범위 및 제3장 부적정 제안사업 참조).

>>> 협의의 주민참여예산 규모와 자체사업비 대비 비중(2022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주민참여예산 규모				자체사업비	
		평균(A)	최고값	최저값	중앙값	예산액(B)	비중(A/B)
광역 단체	특·광역시	25,904	62,876	6,279	18,718	4,152,417	0.6
	도	12,238	20,042	183	12,769	3,606,722	0.3
기초 단체	시(大)	6,801	12,308	267	4,759	676,807	1.0
	시(中)	9,505	9,967	101	5,253	326,646	2.9
	시(小)	4,282	10,609	110	2,725	237,217	1.8
	군(大)	5,866	9,629	138	2,157	209,112	2.8
	군(小)	4,839	9,551	40	2,453	143,970	3.4
	자치구(大)	2,063	6,609	320	1,498	154,460	1.3
	자치구(小)	1,524	7,862	86	765	79,522	1.9

- 협의의 주민참여예산의 적정 규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협의의 주민참여예산 적정 규모

(단위 : 억원, %)

구분		단체수	적정 규모(비중)		최대 규모	최저 규모
			주민참여 예산액	자체사업비대비 비중		
광역 단체	특·광역시	8	250	0.5	600	200
	도	9	150	0.5	200	100
기초 단체	시(大)	14	100	1.5	150	50
	시(中)	29	100	2.5	100	50
	시(小)	32	50	2.5	100	30
	군(大)	11	50	2.5	100	30
	군(小)	71	50	2.5	100	30
	자치구(大)	36	30	2.5	80	15
	자치구(小)	33	20	2.5	80	10
합계		243		14,148		

※ 주 : 합계액은 각 단체유형별 단체수에 적정 규모를 곱하여 산정한 것임.

- 여기서 제시한 적정 규모는 각 단체유형별 특이값(outlier)을 제외한 단체당 주민참여 예산의 평균이며, 이 평균액을 기준으로 단체유형별로 산출한 자체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여 미세하게 조정한 것임.
- 지역여건이나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의 재량성이 요구되므로 최대~최소의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설정하였는데, 최고값(주민참여예산액)은 특이값을 보이는 특정단체 주민참여예산을 제외하여 구한 것이고, 최소값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서 소극적인 자치단체의 달성 목표치로서 단체유형별 중앙값과 최소값을 감안하여 임의로 설정한 것임.
- 이와 같이 도출한 주민참여예산의 적정 규모에 기초하여 전체 주민참여예산 총액을 재산출하면, 자체사업비 대비 비중을 기준으로 1조 4천억원으로 나타남.

IV

자치단체 운영 사례



IV. 자치단체 운영 사례

1. 도시형 광역자치단체

가. 대구광역시

▣ 개요 : 대구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사업분야

구 분		사업내용
합계		
광역	시정참여형	- 광역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혹은 2개 이상 구·군의 시민 편익 사업
	청년참여형	- 청년 일자리, 창업, 교육, 창작활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지원
구·군	구·군참여형 (8개)	- 구·군 소관사무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읍·면·동	읍·면·동참여형 (142개)	-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 운영방식 : 주민제안사업(공모)에 대한 위원회 심사 등을 통한 사업선정 후 예산편성
 - 읍·면·동참여형 사업 : 공모사업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통한 발굴사업
 - 주민제안사업 연중 상시접수 : 정기접수(공모) + 인터넷 통한 수시접수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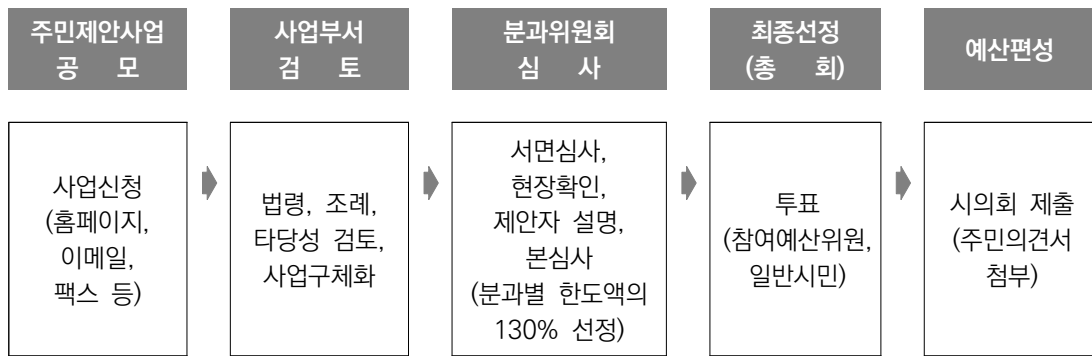
▣ 주민참여 방법

- 주민참여 예산편성 설명회 개최
 - 추진방법 : 분과위원별 중점시책 및 예산편성 방향 설명, 시민의견 수렴
 - 참여 : 전문가, 주민참여예산위원,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

• 주민제안사업(공모)

- 사업규모 : '23년 4개분야 170억원
- 참여대상 : 대구시민(단, 대구광역시 및 구·군 공무원, 산하 출연기관과 투자기관 종사자 제외)
- 선정방법 : 주민제안사업 심사 및 우선순위 선정(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최종선정 : 시민투표 + 주민참여예산위원 투표



• 예산아카데미 운영

- 사업비 : 36백만원
- 교육주관 : 대구광역시

교 육 과 정		일 시 (교육시간)	교육대상 (참석인원)	내 용
사이버 예산 아카데미	기본교육	상시 운영 (총 과정 2시간)	주민참여예산위원, 읍·면·동주민참여예산위원, 일반시민, 공무원	▶ 주민참여예산제 소개 ▶ 주민참여예산제 주요제도
	심화교육			▶ 주민제안사업 검토·심사 방법 ▶ 모니터링 제도
	읍·면·동 참여형			▶ 읍·면·동 지역회의 구성과 운영 ▶ 읍·면·동 지역회의 주요 사업
	예산편성 및 운영과정			▶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신청서 작성법			▶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 방법 전반 및 구체적인 작성법

교 육 과 정	일 시 (교육시간)	교육대상 (참석인원)	내 용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 교육	1회당 1시간(2회)	시, 구·군 주민참여예산 사업담당자	▶ 주민제안사업 적격성 확인 등 타당성 검토 및 사업내용, 사업비 검토 등 사업구체화
읍·면·동참여형 사업 운영 교육	1회당 3시간(2회)	구·군 및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자	▶ 읍·면·동 참여형 사업(읍·면·동 지역회의) 안내 ▶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한 사업제안, 심사, 선정 등의 주민 참여방법
주민제안사업 심사 방법(신설)	1회당 1시간(2회)	시 주민참여예산위원	▶ 주민제안사업 심사 방법 교육 및 사례 안내
찾아가는 예산학교	8개 구·군별 1시간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	▶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개요 ▶ 예산낭비신고센터 제도 ▶ 사이버 예산 아카데미
주민의견서 작성 교육	6개 분과별 1시간	주민참여예산위원, 지원협의회 위원	▶ 주민의견서 작성법 ▶ 2023년 대구시 예산안 설명

● 주민제안사업 모니터링 실시

- 시기 : '23년 6월, 11월
- 대상사업 : 236건('23년 신규 228, '22년 이월 8)
- 참여인원 : 주민참여예산위원, 지원협의회위원 40여 명(분과위원회별 모니터링단 운영)
- 목적 :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 상황확인 등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실효성 확보
※ 참여자 활동비 : 심사비(서면) 9만원, 현장출장비 1일 2만원(4시간 이상)/1만원(4시간 미만)

●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 토론회 개최

- 일자/장소 : '23.12월 중 / 미정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 지원협의회 위원,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등
- 행사내용
 -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유공 위원 및 공무원 등 표창(시장)
 - ▶ '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경과보고, 발전방안 발표, 제도개선 의견수렴 등

■ 주민참여기구 구성·운영 현황

• 구성 현황

- 인원 : 100명(위촉직) / 임기 : 1년(2023.01.01. ~ 12.31.)
- 위원정수 1/2범위 내 1회에 한해 연임
- 위원 선출방식 : 시민 공모 신청자에 대해 전자추첨으로 선출

구 분		구 성	임기	주 요 기 능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전체회의	100명(공모 88, 추천 12명)	1년	▶ 예산편성 시 시민의견 수렴 ▶ 의견수렴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 제출
	운영 위원회	14명(총회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 위원장·부위원장)	1년	▶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등에 관한 사안 ▶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사안
	분과 위원회	6개 분과, 분과별 12~20명	1년	▶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 위원회가 부의하는 주민제안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지원협의회		13명 (전 주민참여예산위원 12, 당연직 1)	1년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 지원 ▶ 개선방안 의견 제시 등

■ 주요 제도 개선 사항

• 질적 성장을 위한 운영 개선

- 구·군참여형 사업비 배분방식 개선
 - ▶ 일반사업 한도액 상향 조정(0.5억원 → 1억원)으로 구·군 주민제안사업 규모 확대
- 읍·면·동참여형 사업비 배분방식 개선
 - ▶ 사업비 일괄배분 방식에서 자율 편성으로 개선
 - ▶ 일반사업 한도액 상향 조정(0.28억원 → 1억원)

- 구·군, 읍·면·동참여형사업 평가기준 개선
 - ▶ 구·군 및 읍·면·동 운영실적 평가 시 정량·정성평가 배점 조정
 - ▷ 기존 : 정량평가 70, 정성평가 30 → 조정 : 정량평가 65, 정성평가 35
 - ▶ 양적 성장 지양을 위해 구·군평가 시 ‘공모건수 증가’ 정량지표 삭제 및 배점 조정
 - ▶ 읍·면·동 평가에 따른 사업비 차등 배분 완화
- 위원회 운영 내실화
 - 청년참여형사업 축소에 따른 청년분과 위원수 축소
 - 분과별 현장확인 필요 제안사업에 대해 서면심사 전 현장방문을 진행하여 심사 효율성 제고
 - 예산아카데미 과정 확대 운영
 -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주민제안사업 심사방법 안내 교육 신설

■ 핵심 성과('22년 기준)

- 찾아가는 주민투표! OMR카드 활용 현장투표소 운영으로 시민참여 확대
 - 시정참여형, 청년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최종 선정 152개 현장투표소 설치 운영
 - 온라인투표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및 모바일 투표 가능
 - ▷ 대구시민 1% 이상인 27,743명 참여(전년대비 677명, 2.5% 증가)
- 주민참여예산제 SNS홍보 및 청년참여 유도를 위한 청년서포터즈단(16명) 운영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제 SNS홍보 콘텐츠 작성 게시(188건), 기사·자료·소식 등 링크(102건)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참석(6회, 13명)
- 사업실명제 시행을 위한 사업표지판 설치로 투명성 강화
 - 사업제안자, 심사주체(분과, 구·군)를 공개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

붙임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과정의 투명성·민주성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주민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3.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와 구·군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민에서 제외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등)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 등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과 제6조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마다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해당 연도 한도액,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시민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공하는 교육내용과 범위 등

을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과정에의 주민 참여 범위는 해당 연도의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등) ①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예산과정에 참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참여
2. 각종 설명회, 토론회, 설문조사, 전자투표 등을 통한 참여
3. 서면 등을 통한 의견제출
4. 공모사업에의 응모 등

③ 시의 예산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구청장 및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4. 시장이 추천하는 시정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과정에 참여와 그에 따른 의견제출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시장이 위원을 공개모집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위원은 자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4. 운영의 자율성, 건전성 제고 노력

제12조(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5. 기타 국고보조사업, 법정 또는 협약 등에 따라 의무적 경비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 등은 제외한다.

제13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전에 대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보내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주민제안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분과위원회별 소관부서의 주무과장은 간사가 된다.

④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총회) ① 위원장은 총회를 개최하여 예산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으며, 그 허가절차 등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및 지원협의회

제19조(지역회의) ①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군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각 구·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본다.

② 지역회의는 각 구·군별로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지원협의회)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지원 등

제21조(예산교육 등) ① 시장은 주민의 예산과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 등의 예산실무와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교육 기본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일반시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예산교육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시 공무원교육원의 「외래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효율적인 예산교육 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협의회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와 협의회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준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도시형 기초자치단체

가. 경기도 시흥시

■ 개요 : 실질적 참여로 제도의 발전적 운영

-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활성화 및 주민참여의 범위확대로 주민의 실질적 참여보장
- 자치계획형 참여예산 단계적 확대로 자치실행력 보장

■ 주민참여 방법

- 주민제안사업(일반제안사업, 자치계획형사업)
 - 규모 : 일반예산범위 내 (자치계획형 사업의 경우 각 주민자치회 4천만원 한도)
 - 제안접수 : ~2023. 5. 31.까지 / 시흥시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및 이메일, 우편접수
-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과정의 참여
 - (위원회) 사업타성성 및 예산적적성 검토 및 사업숙성
 - (참여예산한마당) 제안사업에 대한 현장심사 / 9월 중
 - ※ 각 동 안배하여 약 100여 명 일반주민 참여
 - (온라인투표) 전체주민대상 제안사업에 대한 온라인 투표 진행 / 8~9월
- 주민참여예산 및 주요사업 집행과정의 참여
 -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 사업추진현황 연 2회 홈페이지 공개(담당자, 사업추진율 등)
 -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연 2회/ 시 사업 및 지역사업 전체)
- 주민참여 예산학교 참여
 - (동 지역회 대상) 자치계획형 참여예산 교육 및 제안서 작성 컨설팅
 - (청소년 대상) 2023청소년 주민참여예산학교 / 관내 초등학교에 교육 지원

- (토론형 참여예산학교) 시흥시 예산실무 및 주민의견서 작성 / 위원회
- 주민참여예산제도 워크숍 개최
 - 동 지역회 연합 워크숍 개최로 우수사례 및 정보공유로 참여역량 강화 / 9월 중

■ 주민참여기구 구성·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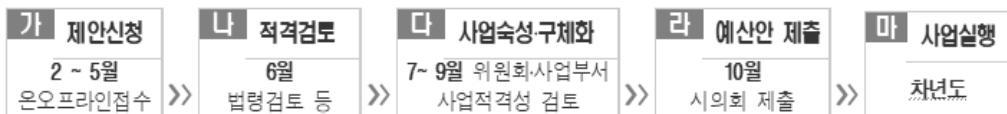
- 구성 현황
 - 인원 : 50명(위촉직 42, 당연직 8) / 임기 : 2년(~)

구 분		구 성	임 기	주요기능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전체 회의	50명 - 당연직 8명 - 위촉직 42명	2년 (1회연임 가)	▶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 주민참여예산 심의·조정 ▶ 주민참여예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분과 위원회	4개 분과, 분과별 8여 명	"	▶ 기능에 따른 분과(기획홍보, 지역예산) 운영 및 주제별 분과(자치행정, 도시환경) ▶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및 발전방향모색 ▶ 지역회의 운영관련 정보교류 및 활성화
지역회의		19개동	"	▶ 주민자치와 연계하여 마을종합계획 수립 ▶ 실질적 주민참여와 실행력 확보로 자치분권실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10명 이내	별도 계획수립	▶ 주민참여예산활동에 관한 학습 및 사례연구 ▶ 주민참여예산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

※ 위원선출 : 공개모집

■ 주요 제도개선 사항

- 공모사업 운영개선 : 일반제안사업 + 자치계획형사업
 - (일반제안사업) 일반예산 범위 내 누구나 제안가능 / 해당부서 및 동행정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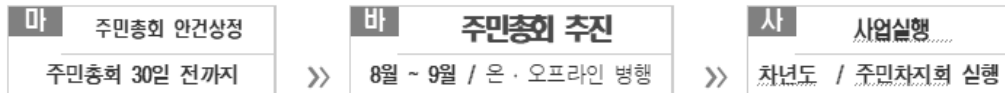


- (자치계획형사업) 각 동 4천만원 한도, 주민총회로 확정 / 주민자치회 실행

첫째. 자치계획 수립



둘째. 주민총회 운영



■ 핵심 성과

- 주민자치-주민참여예산 연계·통합 운영으로 참여확대 및 자치력 향상
 - 주민대표성을 띠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 등 지역회의의 연계·통합운영으로 주민의 실질참여를 확대하며, 사업선정 시 주민총회과정을 통하여 절차적 민주성 확보
 - ※ 2023.3월 기준 전 19개 동 중 17개 동 주민자치-참여예산 지역회 통합운영 중
 -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의 단계적 확대('22년 2천만원 → '25년 5천만원)로 자치실행력 확보
- 참여역량강화 및 제도발전을 위한 숙의과정 추진
 - 토론식 주민참여예산학교('22.11.~12), 제도발전을 위한 100인 토론회('22.12.6.), 정책연구(경기연구원) 추진 등 주민-전문가-행정이 함께 제도발전 방향 모색
 - 주요의견 및 개선사항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붙임

경기도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시흥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2. 18>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을 할 경우 주민참여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

②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의견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8>

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8>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8>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에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전액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 본예산으로 한정하며, 인건비·법적경비·경상경비는 제외한다.

제8조(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 그 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2>

1. 주민총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등을 통한 의견 제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

[전문개정 2019. 2. 18]

[제목개정 2020. 4. 2]

제9조(의견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

제10조(결과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흥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2. 18, 2020. 4. 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7. 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에 따른 주민이어야 하고, 제3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 7. 8, 2019. 2. 18, 2020. 4. 2>

1.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사람
 2.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시흥시의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위원장. 단,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기능을 담당하는 분과장
 4. 주민참여예산담당 국장 및 본청 국장급 공무원
 5. 예산담당 부서장
 6.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 2. 18>
- ⑥ 위원회 구성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 7. 8, 2019. 2. 18, 2020. 4. 2>

1.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주민총회 등의 개최
2.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주민참여 예산안 심의·조정
3.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홍보와 교육활동
4.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임기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4. 2>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 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8>

1. 시 관할구역(지역회의의 위원인 경우에는 동 관할구역을 말한다)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만 해당한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 7. 8>

제17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의견 수렴 등 주민참여 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7. 8]

제18조(회의결과의 공개) 위원회 회의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1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등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를 둔다. <개정 2019. 2. 18, 단서삭제 2020. 4. 2>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2. 18, 2020. 4. 2>

③ 지역회의의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④ 지역회의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직무는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7. 8, 단서신설 2019. 2. 18, 개정 2020. 4. 2>

⑤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동 주민센터 사무장이 된다.

⑥ 지역회의의 위원의 임기, 해촉 등은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7. 8, 2020. 4. 2>

⑦ 지역회의의 구성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 7. 8, 2019. 2. 18, 2020. 4. 2>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
3. 동별 설명회, 주민총회 등을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위원회 및 시장에게 주민참여 예산안 제출
5.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7.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

제21조(회의) ① 지역회의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한다. 다만,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 7. 8>

② 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지역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역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 7. 8>

[제21조는 삭제,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0. 4. 2]

제22조(지역회의의 대행) ① 시장은 동장의 요청에 의거, 동 지역회의를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행시킬 수 있으며, 대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1조제4항제3호의 당연직 위원은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2]

제5장 보칙

제23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운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위원회와 지역회의 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사회적 약자의 참여보장) 시장과 동장은 위원회와 지역회의를 구성함에 있어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4. 7. 8>

제25조 삭제 <2014. 7. 8>

제2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및 지역회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과 동장은 위원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청소년위원회,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8>

② 시장은 위원회·주민참여예산연구회·청소년위원회·지역회의 운영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7. 8>

③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8>

제28조(지역회의 예산안 검토) 시장은 지역회의에서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사전에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8 조례 제13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흥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1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3조(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지역회의의 위원부터 적용하며, 그 임기의 계산은 2014년도 위촉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부칙 〈2019. 2. 18 조례 제1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4. 2 조례 제19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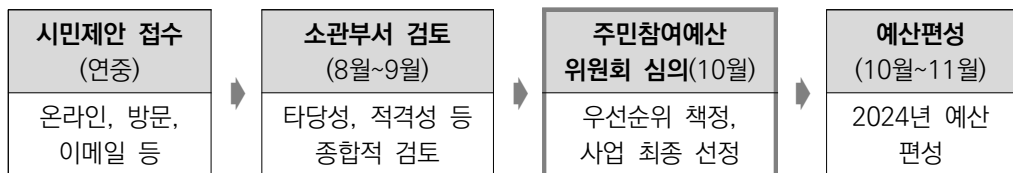
나. 충청남도 당진시

■ 개요

- 예산편성 및 사후관리 과정 등에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 관련 부서 및 읍·면·동 사전협의 등을 통한 제안사업 구체화로 채택률 향상
- 임기만료 주민참여예산위원 신규 구성 및 예산교육 등을 통한 위원 역량 강화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로 주민 관심도 제고

■ 주민참여 방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 일시/장소 : 8월 중 / 당진시청(예정)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주요내용
 -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위촉
 - ▶ 주민참여예산 선정 및 운영 결과 등 공유
- 시민제안사업(공모)
 - 규모 : 300백만원(건당 최대 30백만원)
 - 신청기간 : 연중(집중접수 6월~8월)
 - 제안접수 : 온라인(시청 홈페이지), 방문, 이메일 접수 등



- 주민참여예산 교육 추진
 - 참석대상 : 당진시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읍·면·동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 등
 - 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설명, 2024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설명 및 의견 수렴 등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내용
 - ▶ 예산낭비 사례·예산 절감 방안 등 다양한 의견 수렴
 - ▶ 처리사항 회신(신고, 민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개선 조치

■ 주민참여기구 구성·운영 현황

- 구성 현황
 - 인원 : 47명(위촉직 47명) / 임기 : 2년(2021.9.1.~2023.9.1.)

구 분		구 성	임기	주 요 기 능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전체회의	47명(공모 13, 시장님 추천 8, 읍·면·동 추천 24, 의회 추천 3)	2년	▶ 마을총회, 주민총회, 시민제안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논의 ▶ 2024년 부서별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의회, 부서 제출)
	분과 위원회	3개 분과, 분과별 16여 명	2년	▶ 분과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 논의

■ 주요 제도개선 사항

- 청년정책 토론회와 연계한 주민참여예산
 - 행사명 : 청년정책토론회 “청년이 그리는 당진”
 - 일시/장소 : 2022. 9. 17.(토) 13:20 / 청년타운 나래
 - 참석 : 60명(청년위원회, 청년서포터즈, 일반시민(신청자))

- 내용 : 청년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정책 제안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



■ 핵심 성과

- 청년들이 토론회를 통해 논의한 정책·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 편의사업 추진
 - 신청 : 9건 258백만원 / 선정 : 2건 28백만원
- 1인 가구 공구 대여, 청년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 학교 등 청년을 위한 사업들이 발굴 되었으며, 어르신 키오스크 교육 등 청년들이 생각하는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 논의

붙임

충청남도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당진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제4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7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협의 한 후 14일이상 공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8조(의견 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제24조에 의한 각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정 분야별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의 담당팀장이 된다.
- ③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
2.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지역회의 의견 수렴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5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예산의 효율성을 추구하되 지역간·계층간 형평성 제고
5.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6.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7.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직제순의 선

임 부서 주무팀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⑧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⑨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회의 개최일시,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의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이 제2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사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관계공무원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매년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 운영은 위원회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24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읍·면·동별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는 읍·면·동별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④ 지역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운영) ① 지역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의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읍·면·동의 예산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의장은 해당 읍·면·동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통리에서 건의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조정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추천
4. 그 밖의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주민참여예산 지원단

제27조(구성 및 운영) ①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 ② 지원단은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지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를 둔다.
- ④ 지원단장, 부단장은 지원단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팀장이 담당하되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 ⑤ 단장, 부단장,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단장은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을 대표한다.
- ⑦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간사는 지원단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단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시장과 협의하여 지원단 회의를 개최한다.

- ② 지원단은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원 활동
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련
4. 그 밖에 지원단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장 지원 등

제3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 지원단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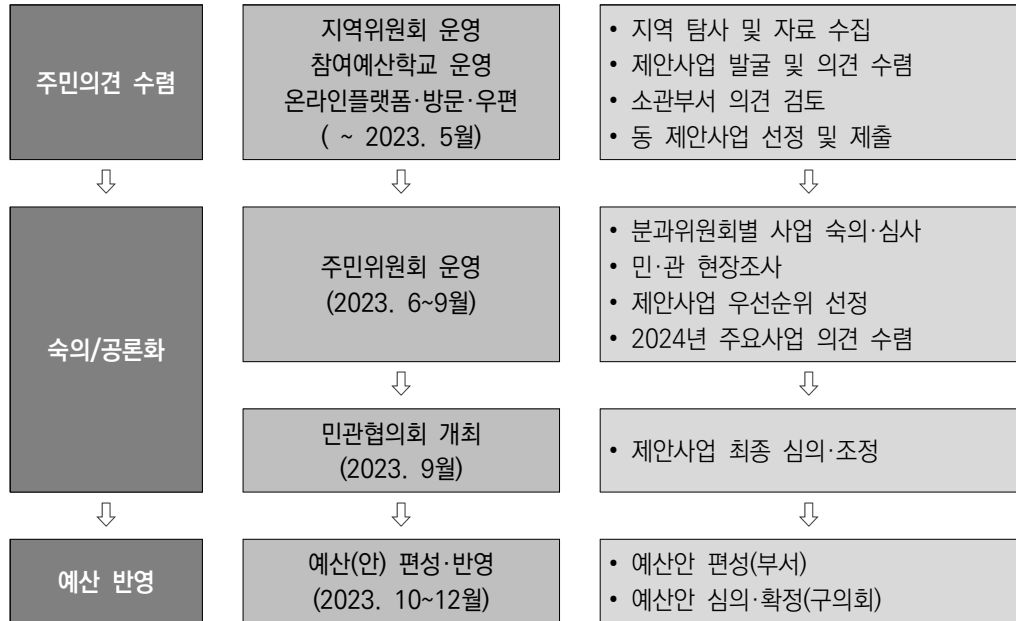
■ 개요 : 참여계층 다양화를 통한 주민참여 범위 확대

- 계층별 참여예산학교 단계별 확대 추진
 -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미래 세대의 참여예산학교를 통한 시민역량 강화 및 정책 참여 기회 보장
 - 향후 학부모, 노인, 장애인 등 참여 계층의 추가 확대를 위한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사업 발굴
-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정책 참여를 위한 접근성, 편의성 제고

■ 주민참여 방법

- 주민참여 예산편성 설명회
 - 방법 : 5개 분과위원회 운영(자치문화, 청소년, 경제환경, 안전교통, 도시관리)
 - 주요내용 : 다음연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 설명, 의견 수렴
- 주민제안사업(공모)
 - 규모 : 사전 실링 설정(14억)
 - 대상사업 : 지역문제 해결 및 주민편의사업 등 공공성 예산편성 전 분야
 - ↳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 제안사업 및 문화도시 분야, 청년·청소년·어린이 등 미래세대 계층별 참여예산 분야 적극 발굴
 - 운영기간 : 연중
 - 참여방법 : 지역위원회, 주민위원회, 참여예산학교, 온라인플랫폼 등

- 운영절차



● 예산학교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교육대상 : 지역 및 주민위원회, 동 및 사업부서 관계공무원, 일반 주민 등

- 교육과정 운영 : 동 맞춤형 참여예산학교, 계층별 참여예산학교, 주민위원 역량강화 교육, 언제나 참여예산학교(온라인)

- 교육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및 우수사례 소개, 의제 발굴 지원 중점사항, 제안서 작성 워크숍 등

● 주민제안사업 모니터링 실시

- 시기 : 반기별(연 2회)

- 대상사업 : 63건('23년 신규 42, '22년 즉시반영 21)

- 목적 : 제안사업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추진상황 확인, 보완사항 의견 수렴 등

- 주민참여 퍼실리테이터 양성 및 지원
 - 시기 : 상시
 - 구성인원(수료인원) : 17명
 - 내용 :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주민참여 역량강화 지원
 - ▶ 회의 지원 : 주민제안 절차 및 방법, 제안서 작성 요령 등
 - ▶ 교육 지원 : 청소년 등 계층별 교육 등 소통 촉진 역할
- 주민참여예산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 시기 : 2023. 6월 중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 위원
 - 내용 :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활동 교육 및 위원 간 화합·소통의 장 마련으로 제도 활성화 도모
- 온라인 주민투표
 - 시기 : 2023. 6. ~ 7.
 - 대상 : 제안사업 중 2024년 예산 반영 가능으로 검토된 사업
 - 참여자격 : 부평구민 또는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등
 - 결과반영 : 주민위원회 분과별 심의 결과와 합산 집계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시기 : 2023. 12월 중
 - 참석대상 : 지역 및 주민위원, 동 및 사업 담당 등
 - 행사내용 : 2023년 주민참여 운영결과 보고 및 사례발표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 주민참여기구 구성·운영 현황

• 구성 현황

- 인원 : 840명(위촉직 835, 당연직 5) / 임기 : 2년(2022.2.10.~2024.2.9.)

구 분		구 성	임기	주 요 기 능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지역 위원회	724명 (주민자치회가 대행, 동별 20~40명)	2년	▶ 지역사회 제안사업 발굴 및 심의, 동별 우선순위 결정 등
	주민 위원회	97명 (공모 68명, 추천 29명)	2년	▶ 5개 분과, 분과별 20여 명 ▶ 예산편성 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 제안사업 검토·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 주민의견서 작성
	운영 위원회	7명 (분과장, 위원장, 부위원장)	2년	▶ 위원회 운영 방향 및 의견 조정 등
민관협의회		12명 (당연직 5명, 위촉직 7명)	2년	▶ 분과회의 및 주민 수렴 의견 최종 심의 ▶ 예산편성 우선순위 결정 및 심의·반영

■ 주요 제도개선 사항

-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일원화
 - 주민자치회 전(全) 동 전환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 개편 필요
 - 주민자치회의 지역위원회 기능 대행
 -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일원화를 통한 행정력과 시민 역량 집중
- 미래 세대(어린이·청소년·청년) 정책 참여 활성화
 - 청소년 분과 운영 및 청년·찾아가는 어린이 참여예산학교 신설 운영
 - 공약사항과 연계한 참여계층 다양화를 위한 참여예산학교 단계별 확대 추진
-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선정 시 온라인 주민투표 실시로 주민 의견 대표성 결함 보완
 - 주민위원회 심의 결과 50% + 온라인 주민투표 결과 50%

- 현장 모니터링 강화
 - 연 2회 실시(서면 1회, 현장 1회) → 연 2회(현장 2회) 및 특별 모니터링 실시

■ 핵심 성과

-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 및 공개로 재정투명성 확보 및 주민 신뢰도 향상
-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로 예산 편성에 주민참여 보장
-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사업발굴로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정책 만족도 제고

붙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구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구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② 이 조례에서 “단체”란 부평구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공공단체,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 보장

제5조(운영계획)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은 우편 및 인터넷,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학교 운영) ① 구청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이 아닌 주민이 예산학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평가보고회 개최)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위원회 활동사항 및 성과 등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한다.

제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 민관협의회 및 연구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민관협의회, 연구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10조(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수렴하는 활동

2.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
 3. 동별 설명회, 주민총회 등을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주민위원회 및 구청장에게 주민참여예산(안) 제출
 5.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6.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③ 제2항에 따른 지역위원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대행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

제11조(주민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주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한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과 위원장이 선임하는 위원을 공동 간사로 한다.

제12조(기능) 주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2.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3. 주민 및 지역회의 의견 심의 조정, 구 자체사업에 대한 반영사항 심의
4.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지원
5.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지원
6.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활동
7. 그 밖에 주민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의 위촉·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사전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동별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거주지 및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주민위원회 운영원칙) ① 주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주민위원회를 대표하고, 주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주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 개최) ① 구청장이 주민참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주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 등) ① 주민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를 둔다.

② 분과는 실·관·국·소별 또는 2개 이상의 실·관·국·소를 합하여 5개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④ 분과에는 분과장과 간사를 두되, 분과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 간사는 분과장이 선임한다.

⑤ 분과장은 분과를 대표하고, 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분과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 간사는 분과장을 보좌하며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주민위원회와 분과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공개) 주민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장소, 심의안건 및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제20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지역위원회와 주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구 본청의 각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주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민관협의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과 주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21조(기능)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심의
2. 예산편성 반영사업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의 심의·조정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민관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제21조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제25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예산 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연구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 또는 연구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26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2.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연구 활동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강구
5. 그 밖의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9조(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21. 11. 1. 조례 제17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위원회 업무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대행 규정은 2022년 1월 14일부터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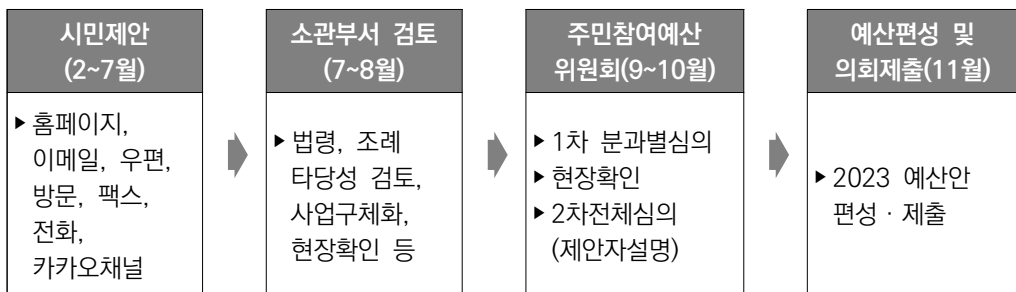
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 개요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내실화

- 주민참여예산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 주민참여예산위원, 청년, 청소년, 여성, 다문화가정, 통장, 일반주민 등 맞춤형 예산 학교 운영으로 주민 역량강화
 - 사이버 예산아카데미 활용 비대면교육 확대
- 「청년참여예산지원단」 구성·운영으로 청년참여예산제 내실화

■ 주민참여 방법

- 주민참여 예산편성 설명회
 - 참석인원 : 분과위원회 50명(경제행정, 복지문화, 도시공원, 안전건설)
 - 주요내용 :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및 사업소개, 주민참여예산 추진 현황 보고
- 주민제안사업(공모)
 - 규모 : 16.45억원
 - 제안접수 : 2023. 2. 20.~7.31.



- 예산학교 운영
 - 사업비 : 150백만원
 - 교육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 청년, 청소년, 다문화가정, 통장, 여성, 일반주민 등
 - 교육과정 운영 : 찾아가는 맞춤형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 심화교육, 청소년참여예산 기본교육, 청년참여예산 기본교육
 - 교육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이해와 필요성, 사업발굴 및 심의방법, 제안서 작성 및 현장모니터링 방법 등 실습위주 교육 등
- 주민제안사업 모니터링 실시
 - 시기 : '23. 2~12월
 - ▶ 정기운영 : 연 2회(6월, 12월)
 - ▶ 수시운영 : 필요 시(민원발생 또는 부진사업 등)
 - 대상사업 : 102건('23년 신규 100, '22년 이월 2)
 - 참여인원 : 달서구 주민참여예산모니터링단 10명, 동별 참여예산위원, 희망주민
 - 목적 :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제안 및 선정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기능 강화
 - ※ 참여자 실비 지급 : 1일 20천원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성과 워크숍 개최
 - 일시/장소 : '23. 10월 말/미정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행사내용
 -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보고, 제도개선 의견수렴 등
 - ▶ 주민참여예산 관련 선진지 견학, 우수지역 사례 공유 등

▣ 주민참여기구 구성·운영 현황

• 구성 현황

- 인원 : 50명(위촉직) / 임기 : 2년(2021.6.1.~2023.5.31., 2022.6.1.~2024.5.31.)

구 분		구 성	임기	주 요 기 능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전체회의	50명 (공모 49, 추천 1명)	2년 (1회연임가능)	▶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조정
	운영 위원회	10명(분과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	▶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조정 등
	분과 위원회	4개 분과, 분과별 13여 명	„	▶ 분과별 제안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현장 방문을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
청소년참여위원회		24명	1년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등
청년참여예산지원단		10명	1년	▶ 청년참여예산 사업 발굴, 제안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선정 등
지원협의회		10명	2년	▶ 참여예산제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제도개선 및 주민의견 수렴활동 등
동참여예산위원회		23동 주민센터	1년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발굴, 우선순위 결정 등

※ 위원선출 : 공개모집

▣ 주요 제도개선 사항

• 청년참여예산지원단 구성·운영

- 구성 : 10명

- 운영 : 2~3회 회의 개최

- 예산교육 : 청년참여예산제도 참여절차, 사업발굴 및 심의방법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모 신청자격 추가

- 2023년에 개최될 심의회, 총회 등 행사에 80% 이상 참석 가능자

- 사이버 예산아카데미 이수 가능자 또는 이수자

■ 핵심 성과(2022년)

- 전체 洞 통장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및 인식제고
 - 일시/장소 : 2022. 10. 12.(수) 10:00, 14:00 / 달서아트센터
 - 참석 : 23개 동 통장 752명
- 주민참여조직과 연계하여 사업의제를 발굴하여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관심 제고
 - 7개동 12단체(청소년지도협의회, 통우회, 우리마을교육나눔회 등) 35건 이상 사업 발굴
- 청소년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축제명 : 달서구 청소년 워터밤 축제
 - 일시/장소 : 2022. 7. 16. /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 참석 : 행사참가자 200명, 청소년참여위원회 10명
 -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행사를 보조 진행

붙임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1.>

1.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4. 1.>

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다. 구에 있는 기관, 단체 및 비영리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

2. “주민참여예산”이란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19. 4. 1.>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4. 1.>

②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권의 범위내에서 운영하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9. 4. 1.>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9. 4. 1.>

1. 주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 <개정 2019. 4. 1.>
2. 주민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개정 2019. 4. 1.>
3. 분야별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방안 <개정 2019. 4. 1.>
4.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설명, 교육, 홍보, 토론 등의 활동계획 <개정 2019. 4. 1.>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4. 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연도의 전체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하되, 국·시비보조금 사업, 인건비 및 법정·협약 등으로 지출하는 의무적경비,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9. 4. 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세워 구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제7조(의견수렴 방법 등)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4. 1.>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4. 1.>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 4. 1.>
4. 주민제안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의견제시 및 홍보 활동 <개정 2019. 4. 1.>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4. 1.>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별,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 4. 1.>

-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4. 1.>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0. 23, 2019. 4. 1.>>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 4. 1.>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 ④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인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4. 1.>

- ②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
-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기록·관리한다.

제14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4. 1.>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9. 4. 1.>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
 4.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주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
- ⑤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4. 1.]

제16조(회의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

에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4. 1.>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제4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목개정 2019. 4. 1.)

제17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

제18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동별로 구성·운영한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성별, 연령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동에 거주하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단위 단체(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회원으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동장은 지역회의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지역회의의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한 사항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동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

제19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제 설정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제안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4. 주민참여제도 발전을 위한 홍보 활동 수행
5.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본조신설 2019. 4. 1.]

제20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지역회의는 해당 동의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동장은 지역회의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

제5장 주민예산학교 운영 등

제21조(주민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

② 구청장은 주민예산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및 지역회의와 협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

[중전의 제16조에서 이동]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지역회의, 주민예산학교, 토론회 등 관련회의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

②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참여 및 운영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위원

과 개인(단체 포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10. 23. 조례 제12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9. 4. 1.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도농형 광역자치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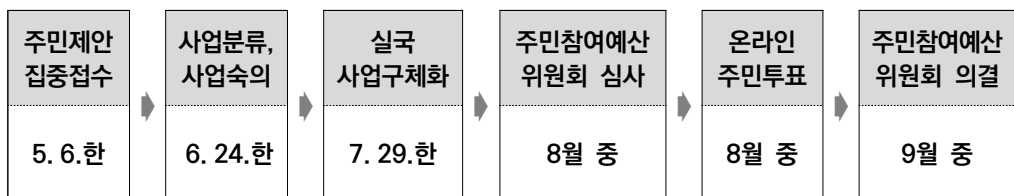
가. 경기도

■ 개요 :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운영 및 제안자 보상 실시로 주민참여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확대 운영(5개 분과 100명 → 6개분과 150명)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공모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안자 인센티브(모바일 상품권) 지급

■ 주민참여 방법

- 주민참여기구 인원수(공무원 제외) : 1,917명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141명
 - 분과위원회 : 141명(기획·행정, 경제·농림, 문광·복지, 건설·교통, 여성·평생교육 등 6개 분과)
 - 지역회의(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1,609명
 - 운영위원회 : 14명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 12명
- 주민제안사업(공모)
 - 규모 : 500억원(도정참여형 300억원, 지역지원형 100억원, 민관협치형 100억원)
 - 제안접수 : 537건



- 예산학교 운영
 - 수료자 수 : 2,374명(기본과정 1,279, 심화과정 575, 청소년 520)
 - 교육과정 운영 : 70회
 - 교육내용
 - ▶ 기본과정 : 일반 도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기초 강의(27회)
 - ▶ 심화과정 :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심사 방법 등 강의(11회)
 - ▶ 청소년 예산교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기초 강의(17회)
- 숙의과정 참여자 수 : 1,822명
 - 도정참여형 주민제안사업 : 전문가 자문단 30명 / 민관예산협의회 60명
 - 지역지원형 주민제안사업 : 지역회의 1,609명
 - 민관협치형 주민제안사업 : 민관숙의토론 기구 50명
-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투표 실시
 - 주민투표 수 : 10,189명
 - ▶ 2023년 중점투자부문 도민 선호도 조사 : 3,588명
 - ▶ 주민제안사업 온라인 주민투표 : 6,601명(2회 실시, 평균 3,300명)

구분	9세 이상 인구수	주민참여예산제 일반주민 참여자						
		계	참여율	기구 위원수 (공무원 제외)	예산학교 수료자 수	사업 제안자 수	숙의과정 참여자 수	주민투표 수
2021년	12,637,961 (10세 이상)	13,211	0.10	1,887	1,150	524	1,785	7,865
2022년	12,530,427	16,839	0.13	1,917	2,374	537	1,822	10,189
전년 대비 증가율(%)	△0.9	27.5		1.59	106.4	2.5	2.1	29.5

■ 주민참여기구 구성·운영 현황

• 구성 현황

- 인원 : 150명(위촉직 141, 당연직 9) / 임기 : 2년(2022.04.26. ~ 2024.04.25.)

구 분		구 성	임기	주 요 기 능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전체회의	150명(공모 80, 추천 61명, 당연 9)	2년	▶ 예산편성 의견수렴 및 의견 제출 ▶ 설명회, 토론회 등 개최
	운영 위원회	14명(전체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 위원장·부위원장)	2년	▶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조정 등
	분과 위원회	6개 분과, 분과별 25명 이내	2년	▶ 주민제안사업 심의 및 예산편성시 주민의견 수렴 등
연구회		12명	2년	▶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 발전방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지원 등

■ 주요 제도개선 사항

•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확대

- 주민참여예산 위위회 확대 운영 (5개 분과 100명 → 6개분과 150명)
- 주민참여예산 참석수당 현실화 (1인당 10만원 → 20만원)

• 주민의 숙의 활동 지원 및 주민제안사업 보상 실시로 주민참여 활성화

- 대면회의 시 퍼실리테이터, 속기사 등 지원
- 사업제안서 보완 등을 위한 지원(전문가 자문단 컨설팅, 제안자와의 소통 등)
- 민관숙의토론회 개최로 제안자와의 소통을 통한 주민 제안 보완
-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공모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안자 인센티브 지급

* 제안자 중 100명 추천하여 모바일상품권 지급

■ 핵심 성과

- 인센티브 지급 및 주민참여 방법 확대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도 및 반영예산액 제고
 - '22년 공모사업 신청건수 증가('21년 524건 → '22년 537건)
 - '22년 주민참여 예산 반영액 증가('21년 164억원 → '22년 220억원)

붙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시행 2020. 11. 12.] [경기도조례 제6783호, 2020. 11. 12., 일부개정]
경기도(예산담당관), 031-8008-285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기도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예산”이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0.11.12.>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내 시·군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6.12.16.]
 - 가.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6.12.16.>
 - 나. 도에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또는 생산시설 등을 둔 기업과 비영리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전문개정 2016.12.16.]
 - 다. 도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신설 2020.11.12.]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6.]

제4조(법령준수 의무)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0.11.12.] <개정 2020.11.12.>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12.]

1. 예산 편성의 방향
2. 도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토론회 개최 계획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주민참여예산 연구회·예산학교 등의 운영계획
4.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제6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2020.11.12.>

제7조(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① 도지사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전문개정 2016.12.16.]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8조(의견 제출) ① 주민은 누구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서면·도 본청 및 소속기관 등에서의 현장 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참여 예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0.1.]

②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는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8.10.1.]

제9조(결과 공개)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의견수렴

및 반영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2018.10.1.>

② 도지사는 제1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0.1.]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0.11.12.]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주민의견의 예산과정 반영에 관한 사항
2. 수립된 주민의견 반영 시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예산 또는 사업 관련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해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때 당연직 위원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전체 위원의 20% 이하로 한다.

<개정 2020.11.12.>

[전문개정 2018.10.1.]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2. 도정 부문별 직능 및 유관단체의 대표
3.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4.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도정 분야별 전문가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10.1.]

④ 위원회는 부문별 예산 현안에 대한 사업내용과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포럼을 구성하고 전문가 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0.1.]

제10조의2(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5.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본조신설 2016.12.16.]

제10조의3(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시·군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다만,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본다.

② 위원회는 지역회의를 통해 각 시·군별 주민의견사업을 수렴하여 도 단위 또는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어야 할 우선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0.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위원회와 시·군 지역회의 간 상호 교류·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한다. [신설 2018.10.1.]

[본조신설 2016.12.16.]

제11조(주민참여예산 연구회)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개정 연구
2. 주민참여예산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도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개선 방안 건의
5. 시·군의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와의 교류 및 공동연구 [신설 2018.10.1.]
6.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법 연구

[제5호에서 이동 <2018.10.1.>]

③ 연구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연구 성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0.1.]

제11조의2(예산학교 운영) ①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16.]

제12조(현장조사 등) ① 위원회는 안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실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회의참석 의뢰,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0.1.]

②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도 산하 공공기관·민간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0.1.]

[제목변경 2018.10.1.]

제13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13조의2(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 업무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다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도농형 기초자치단체

가. 강원도 홍천군

■ 개요 : 홍천군 주민참여예산기구 확대 운영

-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 2022. 3.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의 기능 보강 및 역할 명시
- 주민참여예산기구 재구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41명('21년 31명)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141명('21년 최초구성 137명)
- 주민참여예산기구 역량 강화 교육
- 주민참여예산기구 회의·모니터링·심의 활동 지원
-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강화

■ 주민참여 방법

- 주민참여 예산편성 설명회(권역별 찾아가는 예산학교)
 - 일시/장소 : 2월 ~ 6월 중 6회(읍·면 대회의실, 홍천문화예술회관)
 - 참석인원 : 96명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사례연구, 의제발굴, 사업제안서 구체화
- 주민제안사업(공모)
 - 규모 : 22억원 편성(목표예산 25억원)
 - 제안접수 : 32건 반영(제안건수 162건)



- 예산학교 운영
 - 사업비 : 40백만원
 - 교육대상 :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 일반주민, 청년·여성·청소년의회, 공무원
 - 교육과정 운영: 총 44회
 - ▶ 권역별 찾아가는 예산학교 : 6회
 - ▶ 대상별 찾아가는 예산학교 : 3회
 -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 4회
 -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역량강화 교육 : 20회
 - ▶ 공무원대상 주민참여예산 교육 : 1회
 - ▶ 온라인 예산학교 : 10회
 - 교육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사례연구, 의제발굴, 사업제안서 구체화
- 주민제안사업 모니터링 실시
 - 시기 : '22년 5월 ~ 12월
 - 대상사업 : 9건('23년 신규 9)
 - 참여인원 : 30명
 - 목적 : 집행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성과 워크숍 개최(민관협의회)
 - 일시/장소 : '22년 12월 23일(금) / 군청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위원 17명, 관계공무원 3명
 - 행사내용
 - ▶ 2022년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결과 평가
 - ▶ 2023년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기구 회의·모니터링·심의 활동 지원
 - 지원대상 : 주민참여예산기구 회의·모니터링·심의

- 지원방법 : 퍼실리테이터 지원으로 기구 활동 원활화
- 내용 : 회의·모니터링·심의 시 활동에 대한 목적과 범위 명확화, 위원장 역할 교육 및 지원
-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강화
 - 2022년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영상 제작
 - 홍보방법 다양화 : 신문,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판촉물 / 블로그, 카카오톡채널, 유튜브
 - 참여예산사업 안내표지판 제작 및 부착



▣ 주민참여기구 구성·운영 현황

- 구성 현황
 - 인원 : 182명(위촉직 182명 / 임기 : 2년(2022. 9. 8. ~ 2024. 12.. 31.)

구 분		구 성	임기	주 요 기 능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전체회의	41명 (공모 41명)	2년	▶ 예산편성 의견수렴 및 의견 제출 ▶ 설명회, 토론회 등 개최
	분과 위원회	3개 분과 (분과별 14여 명)	2년	▶ 군민제안사업 심의 및 예산편성 시 군민의견 수렴, 집행 모니터링 등
지역회의		141명	2년	▶ 예산편성 의견수렴 및 의견 제출 ▶ 읍·면계획형사업 제안, 모니터링 등

※ 위원선출 : 공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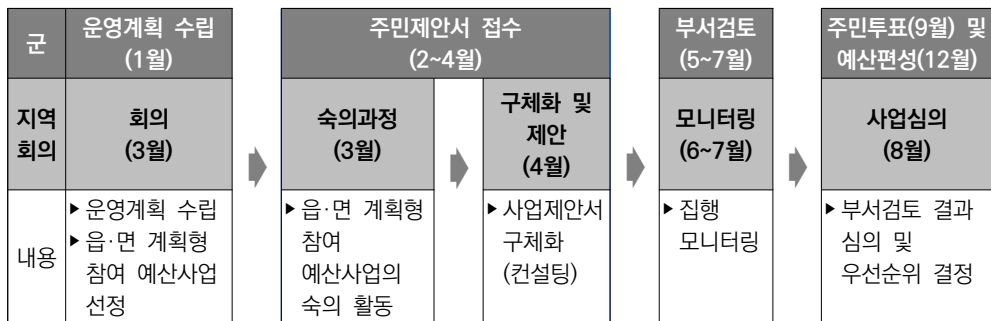
■ 주요 제도개선 사항

- 제1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운영
 - 2021년부터 홍천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읍·면별로 구성하여 활성화 추진
 - 전체회의 참석수당 (1인당 7만원, 2회, 14,242천원 집행)
 - 예산학교 교육 개선 : 기본 및 심화과정으로 2단계 교육 실시
 - 예산위원 사업추진 모니터링 확대 : ('21년) 0회 → ('22년) 8회
 - 지역사업(일반공모 + 읍·면계획형) 24건 반영(363,392천원)
 - 2022년 지역회의 숙의매뉴얼 제작 및 배포

	목 차 Chapter 1 2 하나의 제안이 지역에 정착하기 2 DIKW 모델로 이해하는 주민 이야기 4 주민이 알고 있는 사실에서 지역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방안 만들기 5 1. 주민참여예산 활동으로 얻어진 정보 활용하기 5 2. 2022년 홍천군 주민참여예산 활동으로 지식과 지혜 만들기 7 Chapter 2 19 읍·면 지역회의의 숙의 과정을 통한 '지혜' 찾기 19 1. 홍천군 사업부서와 지역주민과의 소통 19 2. 지역회의 주도의 지식 찾기 24 3. 사업제안서 구체화하기 28 4.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함께 만드는 홍천군 참여예산 31 - 2 -
--	---

■ 핵심 성과

- 홍천군 10개 읍·면에 지역회의를 구성하여 지역의제 논의 및 의견수렴 활성화
 - 지역사업 제안성과 : '20년 0건 → '21년 36건 → '22년 87건 증(51건)
 - 지역회의 회의 개최 횟수 증가 : '20년 0회 → '21년 1회 → '22년 2회로 증(1회)
 - 지역회의 참여 위원 수 증가 : '20년 0명 → '21년 137명 → '22년 141명 증(4명)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지역의제 공론화 기능 강화
 - 지역의제 발굴 → 사업제안 → 부서검토 → 지역회의 심의 → 주민투표(주민총회) → 예산편성 과정을 통한 지역의제 공론화 기능 강화



- 전년도 미반영사업 재검토에 따른 사장(死藏)사업 발굴
 - 전년도 장기과제, 불가사업에 대해 지역회의에서 안건 검토 후 계획형사업으로 선정하여 재추진

붙임 1

강원도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009.06.02 조례 제2064호

(일부개정) 2020.07.01 조례 제2689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 2022.04.13 조례 제282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홍천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 지역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매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

간 동안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예산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면장 또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홍천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 ④ 위원 구성은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청년 등 다양한 참여와 연령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위원회 참여 신청 및 추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4일 이상 공보나 군 홈페이지 또는 군 본청 및 읍·면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공개모집 결과 모집 예정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무작위 추첨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각 분과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별 선임부서 주무담당이 된다.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연다.

②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 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22조(지역회의의 구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의 구성은 해당 읍·면의 주민 20명 내외로 하되 공개모집, 추천 등의 방법으로 읍·면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지역회의의 구성에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청년 등 다양한 참여와 연령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지역회의는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지역회의의 운영) ① 지역회의는 지역위원장 1명, 지역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지역위원장과 지역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읍·면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③ 지역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한다.

④ 지역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지역회의는 관할 읍·면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⑦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제22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할 경우 대행하는 기구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24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2. 지역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한 의제 도출 및 제안사업 발굴
3. 제안사업 검토와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4.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추천
5. 그 밖에 지역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2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읍·면장은 매년 군의 예산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연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제26조(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회장은 주민참여예산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④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부회장과 협의하여 민관협의회 회의를 연다.

제27조(기능)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도 개선방안 논의·조정
2. 운영계획 수립방향 제시 및 의견 수렴
3. 그 밖에 민관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6장 지원 등

제28조(예산학교) ① 군수는 위원회 및 지역회의,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 예산에 대한 이해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위원은 반드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2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 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워크숍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③ 위원회, 지역회의, 민관협의회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포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821호,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강원도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1.06.09 규칙 제1108호

(일부개정) 2018.09.21 규칙 제1256호 홍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2019.12.17 규칙 제1281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20.07.01 규칙 제1294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 2021.04.26 규칙 제1307호

(전부개정) 2022.04.13 규칙 제132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 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제3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의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 분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

1. 행정복지 분과위원회
2. 농업경제 분과위원회
3. 건설도시 분과위원회

②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특정 성별의 위원 또는 같은 읍·면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촉장의 교부) 조례 제10조 및 제22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부칙 〈규칙 제1328호, 2022.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경상남도 거창군

■ 개요 :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운영

- 성별, 연령별, 사회 계층별 현황을 고려하여 위원 위촉
- 사회적약자 계층 위원 수 의무확보를 통한 참여 기회 보장
- 미래세대인 의견 반영을 위해 청소년위원 추가 위촉

■ 주민참여 방법

- 주민제안사업 공모사업
 - 규모 : 16억
 - 공모유형 : 3개분야 / 주민주도형, 청소년·청년주도형, 지역주도형 자치사업
- 찾아가는 주민 예산학교 운영
 - 대상 : 각 읍·면 지역회의 위원, 청소년 등 일반 군민
 - 운영방법 : 강의 위주의 교육보다 토의 등 참여형 위주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이해, 제안사업 함께 만들기
- 주민제안사업 맞춤형 컨설팅
 - 분과위원회 심의 시 제안 발표가 어려운 경우 사업부서에서 심의 지원
 -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예산학교 용역사가 전문가, 퍼실리테이터로서 참여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온라인 선호도 조사
 -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 / 7건, 1,475백만원
- 전 읍·면 지역협의회 자체 운영계획 수립
 -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사업 발굴
 -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거쳐 읍·면 자체 예산 편성

- 운영 과정 상시 모니터링
 - 예산 집행 과정의 공유 및 참여를 위해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리카드 게시
-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 거창군 홈페이지, 카카오톡, 블로그 등 SNS, 리플릿, 보도자료 등

■ 주민참여기구 구성·운영 현황

- 구성 현황
 - 인원 : 30명(위촉직 24, 당연직 5) / 임기 : 2년

구 분		구 성	임기	주 요 기 능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전체회의	30명 - 당연직 5명 - 위촉직 25명	2년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최종 선정 등
	운영 위원회	5명(분과위원 위원장, 위원장4)	2년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및 개선방안,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
	분과 위원회	• 4개 분과 • 분과별 7여 명	2년	▶ 신규 정책사업, 주민 제안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운영실적 : 전체회의(3회), 분과위원회(4회), 지역회의(21회), 운영회의(2회)

■ 주요 제도개선 사항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분야 확대
 - 미래세대인 청년과 청소년의 참여사업 신설(청년주도형⇒청소년·청년주도형)
 - 찾아가는 주민예산학교 청소년 참여와 더불어 공모사업 참여 기회 추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원의 다양화
 -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청소년위원(1명) 추가 위촉

- 주민소통 강화를 위해 속의 과정 추가
 - 1차 : 퍼실리테이터(사업내용, 사업비 구체화)
 - 2차 : 소관부서(중복사업, 법령위배, 사업 시행 가능 여부)
- 운영위원회 역할 재정의 및 활성화
 - 제안사업의 단순 반영이 아니라 정책사업 발굴(2건)

■ 핵심 성과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다양화로 대표성 강화
 - 사회적약자, 청년, 청소년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위원 구성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청년주도형 공모 신청(3건), 선정(4건 592백만원)
-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방법의 다채널화
 - 예산학교 권역별 교육 시 청소년, 사회적약자, 지역민 참여 폭 확대
(이장, 주민자치회 ⇒ 이장, 주민자치회 + 청소년, 사회적약자 등)
 - 홈페이지, 카카오톡, 블로그 등 SNS, 리플릿, 보도자료 홍보 방법의 다각화
- 전 읍·면 지역회의 활성화로 주민 제안사업 참여 확대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 지역주도형 공모 신청(16건), 선정(16건 662백만원)
 -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형 공모 신청(5건), 선정(4건 200백만원)

붙임

경상남도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일괄 개정 2021.12.29.)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라 한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방법의 구체적 운영방안 등

제6조(주민의견수렴 방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2.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운영
3. 군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제7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9조제2항제1호·제2호의 사항
2.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역별, 성별(특정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연령별, 계층별로 균형있게 위촉한다. 다만,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 위원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 선정기준, 모집기간 및 선정인원 등을 미리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지원한 총 인원이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군수는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추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기획보건의사업소분과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소·사업소 소관업무
2. 행정복지분과위원회: 행정복지국 소관업무
3. 경제산업분과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업무
4. 농업분과위원회: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소관부서의 직제순 상위 부서 주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및 개선방안,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 각 분과위원장 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①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역회의는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창읍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거창읍 지역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

1. 주민예산학교 수료자
2. 예산 및 재정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거창읍 지역회의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회의 업무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거창읍 지역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주민예산학교 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예산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예산제 공로자 포상)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우수사업 발굴 등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및 지급방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행정지원) 군수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공간 제공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매뉴얼

발행일 : 2023년 5월

발행처 :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재정협력과장 이용일
행정사무관 이정우
주무관 이해창
전화 : 044-205-3737

인쇄처 : 제일기획

